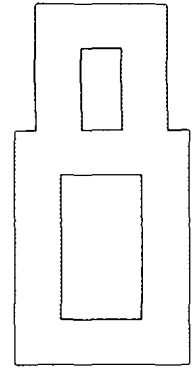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현안분석**

최근의 경제동향과 1997~1998년도 거시경제 전망

일본의 재정구조 개혁

여신전문 금융산업의 특성, 현황 및 개편과제

● **정책토론포트**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 **정책연구**

부동산실명제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외

● **정책흐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외

● **재정통계**

기타 간접세 관련 통계

일천구백구십칠년 팔월호

C O N T E N T S

권두 칼럼		
2	대통령 후보들이 제시한 조세정책	/안종석
현안분석		
6	최근의 경제동향과 1997~1998년도 거시경제 전망	/박종규
32	일본의 재정구조 개혁	/국중호
53	여신전문 금융산업의 특성, 현황 및 개편과제	/이기영
정책토론 리포트		
68	세계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정책연구		
78	부동산실명제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노영훈
81	기업회계기준 개정과 법인세법의 개선방향	/유시권 외
정책포럼		
85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90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수정	
96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 등을 위한 금융개혁법률 입법예고	
102	1997년 상반기 세수실적(잠정)	
재정통계		
107	기타 간접세 관련 통계	

대통령 후보들이 제시한 조세정책

안 종 석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대중매체가 온통 선거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오가는 것 같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편이지만 가끔 조세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고 살펴볼 때가 있는데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런데 얼마 전 모 일간지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제안을 비교하였는데 그 비교항목 중에 세제 및 세정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반가운 마음에 그 내용을 소개하고 검토해 본다.

한 후보는 조세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탈세가 보편화되어 있는 풍토를 개선하여 투명한 조세행정을 확립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하여 "정직한 세무신고를 해도 납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내용만으로는 탈세 가능성이 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인하하여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더라도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소득을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밝혀 결국은 정직하게 신고한 사람과 같은 수

준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결합하여 탈세가 용이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인하하여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고 동시에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그 후의 탈세를 방지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어느 쪽이든 필자는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탈세를 방지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탈세가 용이한 집단에 적용되는 세율을 인하여 정직한 신고를 유도한다는 것이 의중에 있다면 이를 정확히 표명하고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것이다. 세율의 변화를 통해서 정직한 세무신고를 하더라도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탈세가 용이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간의 현행 세부담 분포가 적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른 두 후보는 세부담의 공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중 한 후보는 불공평 과세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고 생활필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한 후보당 두세 줄에 불과한 아주 요약된 정책제안만을 가지고 후보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한 후보는 탈세의 문제에, 또 한 명의 후보는 분배의 형평성에, 다른 한 명의 후보는 분배의 문제와 함께 작은 정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폐지하며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지나치게 형평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제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형평성 이외에도 효율성과 적절한 조세수입의 확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수입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는 우리나라 국세의 근간을 이루는 세목들로서 이 두 세목의 세수입과 특별소비세 수입을 합하면 국세수입 총액의 절반 정도가 되므로 이들 세목의 세부담을 축소하면 이로 인한 정부 수입의 감소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수입의 감소는 지출의 감소 또는 다른 세목으로부터 징수하는 세수입의 증가로 상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세 가지 세목을 제외한 나머지 세목 중에서 비교적 세수 기여도가 큰 세목인 법인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 관세는 모두 개방화된 경제에서 세부담을 증대시키기 어려운 세목들로서, 최근 많은 국가에서 이들 세목의 세수기여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근로소득세 세부담 완화는 정부지출 축소계획과 함께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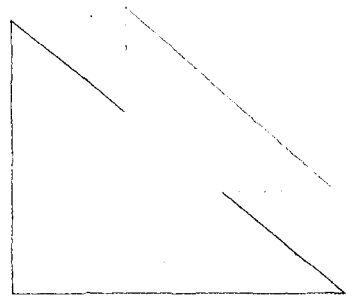
이 후보는 또한 경제의 효율성 문제도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 같다.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부는 조세정책 수립에 있어서 조세가 경제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효과를 최소화하는 조세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세목 중의 하나로 소비세가 지목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역시 조세의 공평성을 주장하는 또 다른 후보는 그 외에도 “세율인하를 통한 조세부담의 축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세부담률의 증가 또는 축소는 그 자체만으로 정책목표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여 국민이 바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조세부담률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의 지출을 축소하는 계획과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세율인하를 통한 조세부담의 축소”보다는 “정부지출의 감소를 통한 조세부담의 축소”가 보다 적절한 말일 것이다.

한 후보당 두세 줄에 불과한 아주 요약된 정책제안만을 가지고 후보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한 후보는 탈세의 문제에, 또 한 명의 후보는 분배의 형평성에, 다른 한 명의 후보는 분배의 문제와 함께 작은 정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모두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국민이 그 중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는 선거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 어떤 후보도 별다른 부작용 없이 이러한 큰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일까지는 아직 4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쯤은 구체적인 추진계획들이 제시되고 선거 실시 전에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더욱 좋을 것 같다. 

현안분석



1. 최근의 경제동향과 1997~1998년도 거시경제 조
박 중 규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2. 일본의 재정구조 개혁
국 중 호 /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3. 여신전문 금융산업의 특성, 현황 및 개편과제
이 기 영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최근의 경제동향과 1997~1998년도 거시경제 전망

박 중 규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1. 서론

1994~1995년 2개년에 걸쳐 실질 GDP 성장률이 8%를 상회하던 우리 경제는 1995년 4/4 분기에 설비투자 증가율이 0.95%로 급격히 감소한 것을 계기로 둔화국면에 접어들었다. 1996년도에는 실질 GDP 성장률이 7.1%로서 비교적 순조로운 연착륙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지만 수출 증가율이 급감하고 재고가 급증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1995년 초 5% 미만이었던 재고 증가율은 1년 반만인 1996년 중반에 들어 20%를 상회하였으며 그동안 20~30%에 달하던 통관기준 상품수출 증가율은 1996년 2/4분기에는 3.5% 증가에 그치고 뒤이어 -7.8% 증가하더니 그 이후에도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그 결과 1996년도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통관기준으로 206억달러, BOP 기준으로 153억달러에 달하였고, 무역외수지 역시 77억달러의 적자를 나타냄으로써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규모인 23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규모는 IMF 등 국제연구기관들이 위협시하는 한계수준인 경상 GDP 대비 5%에 육박하는 것으로서 제2차 석유파동의 충격이 채 가지지 않았던 1981년 이후 가장 큰 수치였으며 이를 계기로 외환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국내외적으로 높았다. 이어서 1997년도 1/4분기에는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2.0%를 기록하였으며 민간소비 증가율이 1981년 1/4분기 이래 16년만에 최저수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1996년도 경상수지의 적자규모는 IMF 등 국제연구기관들이 위협시하는 한계수준인 경상 GDP 대비 5%에 육박하는 것으로서 이를 계기로 외환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국내외적으로 높았다.

준인 4.4%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내수부진이 나타났다.

그러나 1997년 2/4분기 들어 우리 경제는 미약하나마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4 분기의 통관기준 수출은 6.9%의 증가세로 돌아선 뒤 7월 들어 19.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가 하면 6월 현재 경기선행지표가 4개월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재고 증가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1997년 3/4분기에는 경기저점을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본고는 각종 경기관련 지표의 분석을 통하여 1997년 6월까지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1997~1998년의 기간에 걸친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전망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 전망치는 본원의 분기별 거시경제 모형인 KIPF97Q¹⁾를 기초로 산출된 것이다.

II. 최근의 경제동향

산업활동동향 지표로 판단한 1997년 6월까지의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내수가 아직도 극히 부진하긴 하지만 미약하나마 경기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산업생산 증가율은 1997년 1/4분기에 7.1%의 증가에 그치다가 2/4분기에는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등의 수출증가로 12.4%의 실적을 보임으로써 1995년 3/4분기 이래 처음으로 두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재고 증가율은 1996년 3/4분기 이후 1997년 6월까지 하락 추세를 유지하여 1997년 6월에는 10.7%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1997년 6월에는 1995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산업생산 증가율이 재고 증가율을 앞지르는 모습이 나타났다(그림 1)). 그런데 <그림 2>와 같이 산업생산 증가율과 재고 증가율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산업생산 증가율이 재고 증가율을 앞지른 이후 경기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므로 조만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한편 소비관련 지표인 도소매 판매 및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1997년도 1/4 분기에 증가율이

1) 박종규,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한 우리나라의 분기별 거시경제모형: KIPF97Q』,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1997(출간예정). 그런데 본고의 전망에 사용된 거시경제변수들은 모두 1990년 기준 데이터들이며 이들의 1998년도 전망치 역시 1990년 기준이다. 그러나 1998년도의 실적은 모두 1995년 기준으로 개편되어 발표될 것이므로 본 전망을 활용함에 있어서 기준연도의 변화에 따른 오차는 적절히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산업 활동 지표

	1993	1994	1995	1996	1997					
					1	2	3	4	5	6
생산	4.4	11.1	11.9	8.5	5.9	6.1	9.1	10.5	6.3	12.4
출하	5.6	12.0	12.6	8.1	2.5	5.0	5.8	8.5	7.3	12.3
재고 ¹⁾	2.7	6.7	14.9	14.5	15.5	13.6	13.4	13.3	12.1	10.7
제조업평균가동률	79.2	82.7	82.4	81.8	76.9	79.6	80.3	82.5	79.3	78.4
도소매판매	8.5	8.0	7.8	6.9	1.4	3.3	3.9	4.1	4.2	3.9
도매	10.6	9.8	6.9	5.2	0.7	2.4	3.1	3.9	2.5	2.5
소매	6.4	6.1	8.6	8.7	2.0	4.3	4.8	4.2	6.0	4.3
내수용 소비재출하	4.0	9.2	7.4	5.2	-3.2	-1.1	0.0	4.4	-0.3	5.2
설비투자										
국내기계수주 ²⁾	12.1	26.9	15.8	14.3	-27.5	-5.6	38.4	17.6	-8.0	-0.1
기계류 내수출하	3.6	22.0	21.4	7.5	2.9	-0.4	1.7	6.7	-0.5	4.9
기계류 수입액	1.1	37.6	27.0	12.7	-14.6	-2.1	-7.5	-18.8	-13.8	-13.5
건설투자										
국내건설수주	19.3	18.5	24.4	21.4	2.7	39.9	54.2	46.6	5.0	48.6
건축허가면적	24.5	-1.3	1.0	-3.0	8.3	-12.7	-4.7	0.2	15.8	0.4
경제활동 참가율	61.1	61.7	62.0	62.0	60.7	60.6	62.1	63.0	63.2	63.0
실업률	2.8	2.4	2.0	2.0	2.6	3.2	3.4	2.8	2.5	2.3
계절조정 실업률	-	-	-	-	2.4	2.6	2.9	2.7	2.6	2.5
취업자수 증가율	1.5	3.0	2.7	1.9	2.7	2.1	2.6	2.3	1.7	1.6
광공업	-3.8	0.7	1.4	-2.0	-1.8	-3.6	-3.3	-3.2	-4.4	-5.5
제조업	-3.6	0.9	1.7	-2.0	-1.9	-3.5	-3.4	-3.3	-4.5	-5.6
사회간접자본 및 건설업	5.8	5.8	5.1	4.8	5.0	4.8	5.0	4.9	4.7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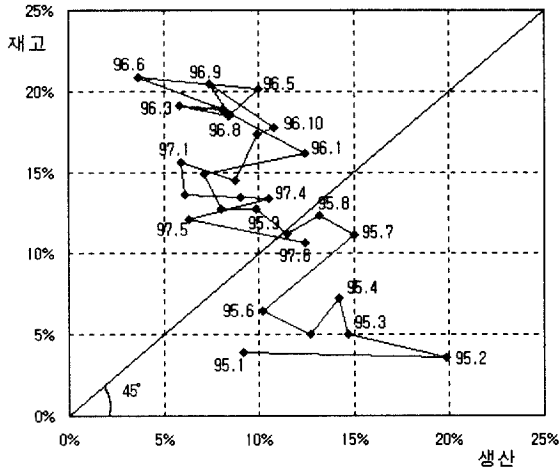
주 : 1) 재고는 기간말 기준 2) 선박 제외

급격히 둔화되다가 4~5월중에는 다소 회복되긴 하였으나 아직도 매우 부진한 상태이다.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1997년 1/4분기에 -1.4%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2/4분기에는 3.0%로 다소나마 상승하였는데 내구재 소비재 출하가 2/4분기에 16.2%로 상승한 것은 민간의 소비심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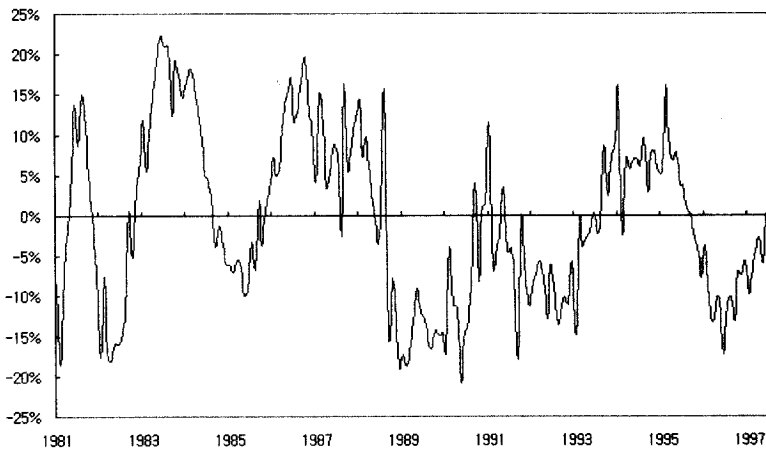
설비투자의 동행지표인 기계류 수입액은 1997년 1/4분기에 8.3% 감소하다가 2/4분기에는, 15.6%나 감소하였으며 국내기계 수주 역시 1997년 1/4분기에 1.9%, 2/4분기에 2.6%밖에 증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도 6월 현재까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경기선행지수의 증가율은 1997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였는데 이와 같은 선행지수의 모습은 향후의 경기회복을 예고해 주고 있다.

〈그림 1〉 최근의 재고 및 생산 증가율 추이



〈그림 2〉 생산 증가율 - 재고 증가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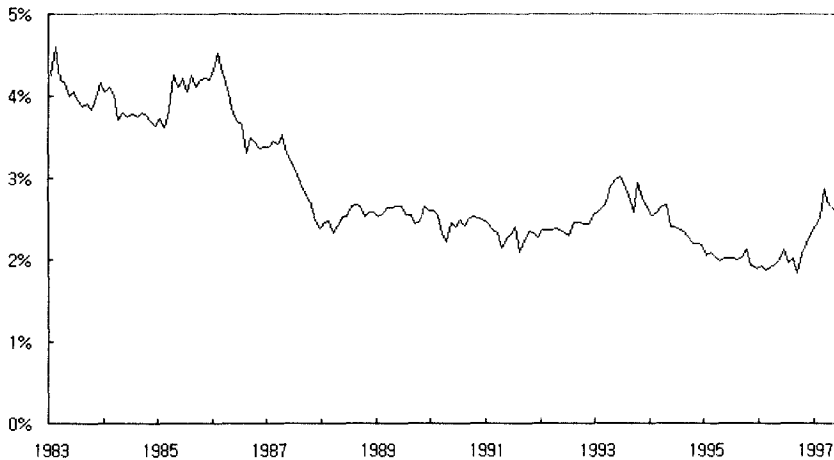


가하지 못하는 등 최근의 설비투자는 극히 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건설투자 관련지표인 건설수주는 1997년 1/4분기 들어 6월 현재까지 상당한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설비투자에 비해 건설투자는 다소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나 가까운 시일내에 전반적인 건설투자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로 미루어보았을 때 아직도 내수는 극히 부진한 상태이다. 현재의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도 6월 현재까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경기선행지수의 증가율은 1997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였는데 이와 같은 선행지수의 모습은 향후의 경기회복을 예고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행지수가 평균 7.6개월 정도의 시차를 가지면서 경기저점에 선행함에 비추어 1997년도 3/4분기에 경기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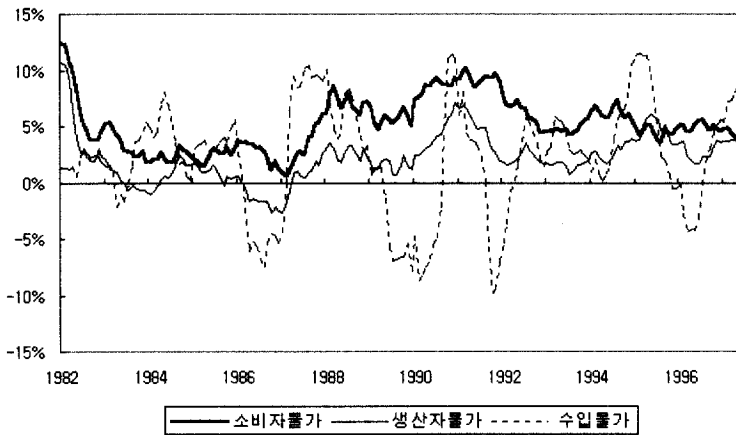
고용부문에 있어서 1997년 1/4분기의 실업률은 3.1%로서 전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0.9%p 상승하였다가 2/4분기에는 2.5%까지 하락하여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6%p 상승에 그쳤다. 계절성을 감안한 계절조정 실업률도 1997년 3월에 2.9%를 기록하여 1993년 6~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2/4분기로 접어들면서 2.7%, 2.6%, 2.5%로 낮아지고 있다. 취업자수 증가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취업자수가 1996년에 이어 1997년에도 계속 줄어드는 등 광공

〈그림 3〉 계절조정 실업률의 추이



1997년 6월까지의 전년말 대비 누적 물가상승률 및 전년동월 대비 상승률 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는 예년에 비해 안정되어 있으나 생산자물가는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정도이며 수입물가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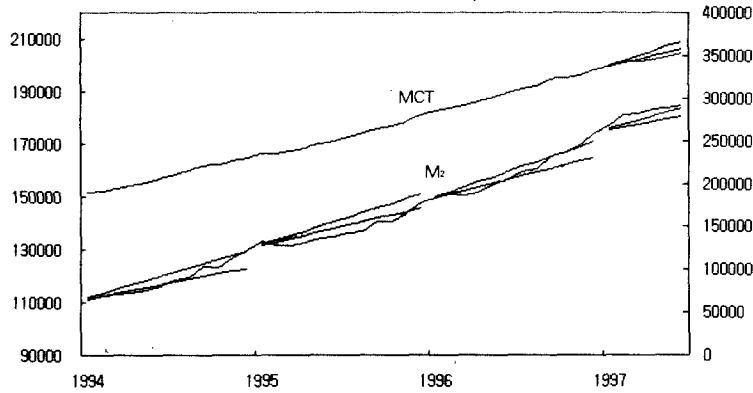
〈그림 4〉 전년동월 대비 월별 물가상승률 추이



업의 고용사정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반면에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의 취업자수는 예년과 유사한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1997년 6월까지의 전년말 대비 누적 물가상승률 및 전년동월 대비 상승률 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는 예년에 비해 안정되어 있으나 생산자물가는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정도이며 수입물가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97년 6월중 생산자물가는 석유제품 등 공산품 가격의 상승과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전년동월대비 3.9% 상승하였는데 1996년 12월 말 대비 1997년 6월까지 2.0%의 상승을 보여 1996년 같은 기간의 1.6%에 비해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97년 6월중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2% 상승, 전년말월 대비 3.3%, 전년동월 대비 4.0% 상승하였다. 상반기 소비자물가의 특징은 1996년에 매우 안정세를 보였던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모든 부문이 1996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되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수입물가(원화기준)는 1997년 6월중 원화의 엔화에 대한 환율이 크게 오름에

〈그림 5〉 통화공급 목표밴드의 공급실적 추이



따라 기계류 등 자본재를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8.7% 상승하였다. 원자재는 기초원자재가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하락했으나 중간원자재는 엔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1997년 6월까지의 통화공급 추이를 살펴보면 MCT는 목표밴드 내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1997년 들어 6월까지의 MCT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총통화(M₂)는 1996년 11월 이후 계속 목표밴드 상한선을 초과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1996년 5월 신탁제도의 개편으로 금전신탁자금이 저축예금쪽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총통화가 목표밴드를 벗어났으나 이러한 조정이 1997년 4월로 일단락되면서 5월 이후에는 하향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총통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신탁제도 개편 이후 크게 달라졌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러한 총

〈표 2〉 금리와 주가 추이

	1996	1997						
		1	2	3	4	5	6	7.5
콜금리(%)	12.2	11.7	12.0	13.0	14.2	11.7	11.5	11.2
회사채수익률(%)	12.6	12.0	12.4	12.5	12.5	11.9	11.8	11.7
종합주가지수	651.2	685.8	676.5	677.3	703.2	756.8	745.4	779.2

주 : 기말일 기준. 콜금리는 1일물, 회사채수익률은 3년물.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자금수요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증대를 통해 단기 자금을 확보하였고 최근 들어 환율안정에 따라 외화예금보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화 증가율이 향후의 인플레이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한편 시장금리는 1997년 5월부터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콜금리는 4월 말 14.2%까지 올랐으나 5월에 들어 하락하고 있으며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도 1997년 4월까지 12%대를 유지하다가 5월 이후 11%대로 진입하였다. 이와 같이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설비투자의 감소와 기업의 재고 조정으로 자금수요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들이 지난 4/4분기에 회사채 발행증대를 통해 단기 자금을 확보하였고 최근 들어 환율안정에 따라 외화예금보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가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의 확대와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 회복 기대, 금리 하락 등으로 1997년 5월 중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여 1996년 말의 651에서 1997년 4월 말 703을 기록한 데 이어 6월 말에는 745를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기아그룹의 부도유예와 잇따른 대기업의 부도설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세는 1997년 7월 말 현재 730선을 유지하고 있다.

〈표 3〉 국제수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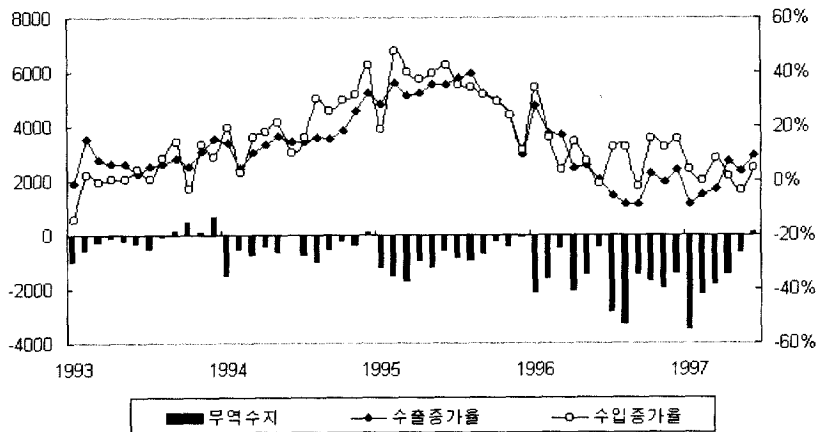
(단위 : %, 억달러)

	1996				1997			
	연간	1/4	2/4	1~6월	1/4	2/4	6	1~6월
경상수지	-237.2	-45.6	-52.6	-98.2	-74.0	-28.8	-3.6	-102.8
무역수지	-153.1	-25.3	-31.1	-56.4	-53.9	-6.7	2.6	-60.6
수출증가율	4.1	20.7	3.9	11.5	-3.0	8.5	11.6	2.8
수입증가율	12.2	18.8	7.8	12.9	5.7	0.9	2.9	3.3
무역외수지	-76.5	-18.7	-18.9	-37.6	-17.8	-21.1	-6.0	-39.0
자본수지	170.3	48.2	73.0	121.3	48.2	66.6	26.8	114.8
종합수지	-56.7	4.4	8.2	12.6	-39.4	27.0	19.6	-12.3

한편 1997년 3월까지 상승하여 달러당 900원선에 육박했던 원화의 대미 환율은 4월 이후 소폭 하락한 뒤 달러당 890원 내외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원유가격은 연초 급격히 올랐다가 3월 이후 7월 말 현재까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1997년 6월에는 BOP 기준 무역수지가 2억 6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외수지 적자 규모도 6억달러에 그침에 따라 경상수지는 3억 6천만달러의 적자에 그쳤다. 국제수지 기준 월별 무역수지는 1997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1997년 6월중에는 수출에서 반도체, 화장품, 전자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는 동시에 경기불황에 따라 자본재, 원자재 수입이 감소하였고 소비재 수입도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체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2.9% 감소하였다. 종합수지는 경상수지 개선과 자본수지 흑자 증가에 따라 5월부터 비교적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1997년 6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전월 말보다 14억 2천만달러 증가한 332억 2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림 6〉 통관기준 무역수지 및 수출입 증가율 추이



1997년 2/4분기의 통관기준 수출은 중화학공업제품 수출이 활기를 보임에 따라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6월중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9.2%가 증가한 123억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4.4%가 증가한 122억달러를 기록하여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9,800만달러의 흑자로서 1994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월별 흑자를 보였다. 특히 7월중 통관기준 상품수출은 19.7%의 증가를 보인 반면 상품수입은 0.6% 감소하여 7월 현재까지 3개월째 수출 증가율을 밑돌고 있다.

6월 현재 경기선행지수가 4개월째 연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생산 증가율이 재고 증가율을 앞지르기 시작하였고 실업률이 그다지 빨리 상승하고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수출 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1997년 1/4분기까지의 수출부진은 반도체 등 주력 수출상품의 가격하락과 지난해 하반기의 엔화환율의 급속한 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 등이 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1997년 2/4분기에 들어와서는 반도체 수출이 5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섬유직물 등 주종품목 수출단가 상승 및 교역 상대국의 수입수요 확대 등으로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1996년중 연 8.2% 감소하였던 대선진국 수출은 1997년 상반기중 3.7%만큼 감소하여 감소세가 둔화되었는데 특히 6월 들어서는 미국(8.1%)과 EU(18.7%)를 중심으로 15.7%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통관기준 수입 가운데 자본재 수입은 1997년 5월까지 감소세(-1.7%, -2.3%, -3.3%, -3.2% -2.4%)를 보이다가 6월 들어 다시 8.9%만큼 증가하여 상반기 전체적으로 -0.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소비재 수입은 5월(-9.0%)과 6월(-7.7%)에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1997년 상반기중 선진국 수입은 3.0% 감소하였고 개도국 수입은 12.3% 증가하였다.

1997년 6월 현재까지의 경기관련 자료를 이상과 같이 검토해 본 결과 현시점에서 경기회복이 시작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향후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는 해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6월 현재 경기선행지수가 4개월째 연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생산 증가율이 재고 증가율을 앞지르기 시작하였고 실업률이 그다지 빨리 상승하고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수출 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다음 장의 경제전망은 이러한 경기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III. 1997~1998년도 거시경제전망²⁾

1997~1998년의 우리나라 거시경제 전망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는데 이 전망에 사용된 주요 외생변수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우선 통화부문에서는 1997년 하반기에 걸쳐 분기말월 평균기준 총통화 증가율이 1997년 연초에 발표된 목표밴드인 14~19%의 중간 값 16.5%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1998년

2) 1997년 7월 기아그룹의 부도위기로 촉발된 재벌그룹의 재무구조 개선 분위기가 어떠한 강도로 실현될 것인가, 동남아 외환시장의 동요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노동법 개정에 따라 노사관계가 어떻게 정착될 것인가, 그리고 금융개혁이 실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등등 향후의 경제에 영향을 줄 만한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본고의 전망은 사실상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표 4〉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1997~1998년도 전망

(단위 : %, 억달러, 억원)

	잠재성장률 ¹⁾	불변GDP ²⁾	경상GDP ²⁾	GDP 디플레이터	민간소비
1997	6.7	6.3	11.6	4.9	4.5
1998	6.5	7.4	15.2	7.2	7.3
	정부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고정자본 형성	재화와 용역의 수출
1997	4.6	-2.6	2.0	0.0	26.8
1998	0.8	9.3	7.4	8.2	13.1
	재화와 용역의 수입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수출물가	수입물가
1997	16.2	4.7	3.7	5.1	6.7
1998	14.1	6.7	4.0	5.9	8.5
	수출단가	수입단가	회사채수익률	통합재정 수지차	전산업 임금
1997	-9.4	-3.0	11.2	-9,161	10.7
1998	8.1	2.2	12.3	-2,009 ³⁾	11.8
	제조업 임금	실업률	상품수출 (통관)	상품수입 (통관)	무역수지 (통관)
1997	10.5	2.4	15.8	10.3	-161.8
1998	10.7	2.5	21.0	15.7	-110.8
	무역수지 (BOP)	무역외수입 (BOP)	무역외지급 (BOP)	경상수지	연평균 대미환율(원)
1997	-104.1	27.1	25.6	-195	883
1998	-43.5	7.3	14.8	-173	910

주 : 1) GNP 기준 잠재성장률임.

2) 1997~1998년도 불변 GNP 성장률은 6.7%, 7.5%이며 경상 GNP 성장률은 11.3%, 15.3%임.

3) 1998년도의 재정기조를 정확히 경기중립적으로 하기 위한 재정수지차 규모임.

민간소비를 결정하는 거시경제 변수들 가운데 실업률과 주식시세 등의 요인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되나 가처분소득, 건설투자, 임금 증가율, 취업자 증가율 등의 요인들은 1997년 1/4분기 민간소비의 부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에는 경기회복이 예상되므로 총통화 증가율의 목표밴드 중간값을 1997년에 비해 1%p 줄어든 15.5%로 정하였다. 그리고 재정부문에서는 통합재정기준 중앙정부 및 비금융 공기업 세출 및 순융자의 1997년도 예산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가정하되 1997년도 정부의 2조원 절감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가정하여 중앙정부 세출에서 2조원을 분기별로 일정하게 나누어 차감하였다. 한편 1998년의 중앙정부 및 비금융 공기업의 지출총액은 1998년도 재정기초가 중립적이라도 하는 수준, 즉 재정팽창지수(FI: fiscal impulse measure)를 0%로 하는 수준의 값을 정하였다. 그 뒤 이러한 연간 총액을 분기별로 배분함에 있어서는 1996년의 진도비를 따랐으며 회계별·성질별로 배분함에 있어서는 1997년도 통합재정 예산상의 구성비를 유지하였다.

한편 지방정부의 1997~1998년도 세출 증가율은 최근 4개년간의 평균 증가율 12%를 택하였고 1997년도 자본수지 흑자규모는 1996년의 172억 3천만달러에서 약 30억달러 늘어난 200억달러로 하였으며 1998년에는 이보다 20억달러 늘어난 220억달러로 가정하였다. 그 외에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 농림어업 부문 GDP 증가율, 각국의 경제성장률, 생산자물가 및 환율, 그리고 기타 원유 및 원자재 가격 등 기타의 외생변수에 대한 가정은 주요 경제변수의 전망근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하였을 때 1997~1998년의 기간중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전망치는 <표 4>와 같다. 이와 같은 전망이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출전망과 물가전망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 표에서 제시한 전망치들 가운데 총소비, 총투자, 통관기준 수출·수입, 환율, 소비자물가 및 GDP 디플레이터, 실업률·전산업 및 제조업 임금 등에 대해 전망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1. 총소비

우선 1997년 1/4 분기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4.4%에 불과하여 제2차 오일쇼크와 냉해의 충격

이 가지지 않았던 1981년 1/4분기(1.99%) 이래로 16년만에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1993년(연평균 5.75%) 1/4분기의 5.56%보다도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민간소비를 결정하는 거시경제 변수들 가운데 실업률과 주식시세 등의 요인은 1993년과 유사한 정도로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되나 가처분소득, 건설투자, 임금증가율, 취업자 증가율 등의 요인들은 1997년 1/4분기 민간소비의 부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소비심리는 이례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민간소비는 빨라도 1997년 4/4분기가 되어야 6% 대로 회복될 것이며 1997년에는 연평균 4.5%의 증가에 그쳐 결국 제2차 오일쇼크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겠으나 수출주도에 의한 성장이 내수회복으로 나타나는 1998년에는 연평균 7.3%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상가격 정부소비는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11.5%, 8.4%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정부소비 디플레이터의 증가로 말미암아 불변가격 정부소비는 1997년중 4.6% 증가에 그치다가 1998년에는 단 0.8%의 정체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불변가격 정부소비가 0.8%의 증가에 그치는 것은 1973년 0.35%의 감소를 보인 이래 역대 최저의 증가율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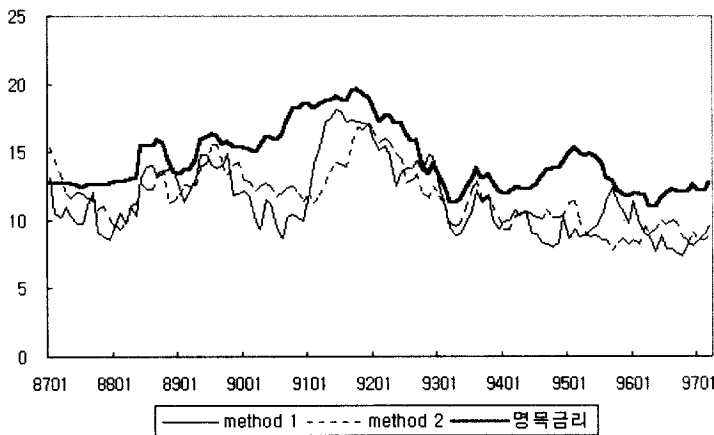
2. 총고정자본 형성

설비투자는 1997년 1/4 분기에 1.6%의 감소를 보여 약 3년 반만에 감소세를 나타낸 이후 1997년 연중 내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며 빨라도 1998년 1/4분기가 되어야 증가세로 반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비투자를 결정하는 거시경제 변수들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총고정자본 형성을 결정하는 중앙정부 자본적 지출 및 순유자 예산이 적지 않은 규모로 잡혀 있고 생산자물가로 디플레이트한 실질금리 수준은 8~9%의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1997년 하반기부터는 수출회복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1997년도의 설비투자는 1992년 하반기부터 1993년 상반기에 걸친 기간과 같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비투자를 수행하는 제조업 부문의 장기적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은 1989년경 감소한 이래 1994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5년부터 1996년 말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수요가 살아나기만 한다면 설비투자는 탄력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설비투자는 주로 수출증가에 의해 회복되겠으나 1997년 말까지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연평균 2.6%³⁾ 정도 감소하다가 1998년중에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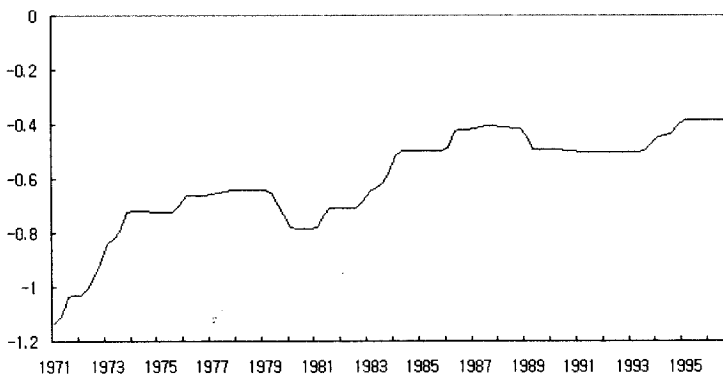
3) 1992~1993년의 기간중 설비투자가 -10% 이상의 감소를 보였던 기간은 1992년 4/4분기(-10.2%)와 1993년 1/4분기(-12.36%)에 걸쳐 있었으므로 연평균 증가율의 하락이 1992년 -1.05%, 1993년 -0.14% 정도에 그쳤지만 1997년에는 마이너스 증가 기간이 연중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1997년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2~1993년보다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분기별로는 1992년 4/4분기~1993년 1/4분기의 기간처럼 -10%씩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비투자는 1997년 1/4 분기에 1.6%의 감소를 보여 약 3년 반만에 감소세를 나타낸 이후 1997년 연중 내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며 빨라도 1998년 1/4분기가 되어야 증가세로 반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명목금리 및 생산자물가 기준 실질금리의 월별추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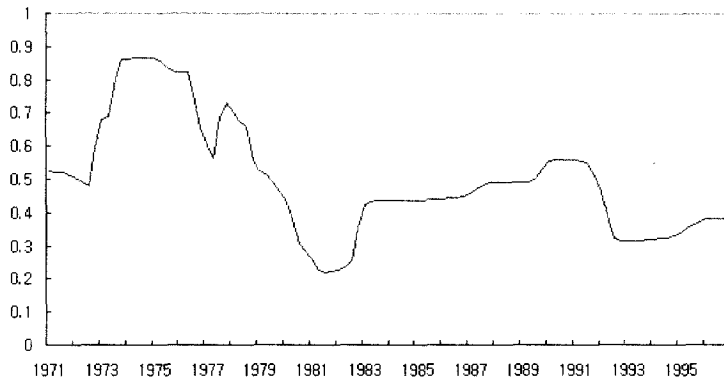


〈그림 8〉 제조업 부문의 장기적 총요소생산성 추이



4) 이 그림에서 method 1이라 함은 계절조정 생산자물가지수의 전월대비 증가율을 연율로 환산한 뒤 6개월간의 이동평균치를 구하고 이것을 명목금리에서 차감함으로써 실질금리를 구하는 방법이며 method 2는 명목금리에서 생산자물가지수의 전월동기 대비 증가율을 차감함으로써 실질금리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림 9〉 건설업 부문의 장기적 총요소생산성의 변화추이



연평균 9.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설투자는 1997년 1/4분기에 2.5% 감소하였는데 이렇듯 건설투자가 감소한 것은 1992년 4/4분기 이래 4년만에 처음이었다. 건설투자가 감소하였던 1992년 2/4~4/4 분기(-1.3%, -3.2%, -3.8%)에는 건설투자를 수행하는 건설업 부문의 장기적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하였다는 구조적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1992년 이후 건설업의 생산성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고 있으므로 1997년의 건설투자도 1992년의 경우보다는 기본적인 여건이 낫다고 판단된다. 물론 1997년 7월 현재까지도 건설업의 경기가 극히 좋지 않으며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남아 있으므로 건설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1997년의 건설투자는 연평균 2.0% 정도 증가하다가 1998년에는 7.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3. 통관기준 상품수출

본고에서 1998년도의 거시경제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통관기준 수출전망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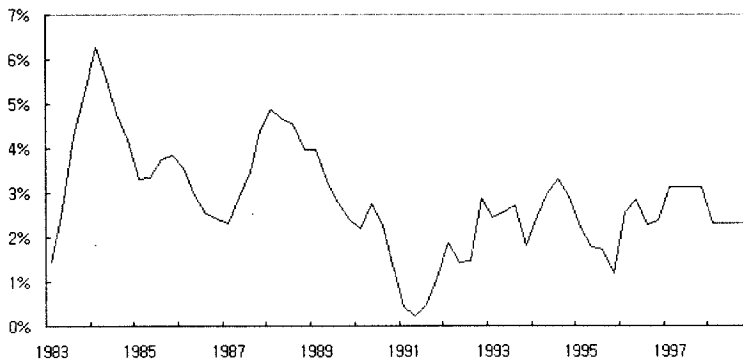
1995년 현재 우리나라 교역규모의 91%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불변가격 GDP를 교역규모의 연도별 비중을 가중치로 가중평균한 선진국 GDP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그림 10〉과 같다. 이 그림에 따르면 선진국 GDP는 1991년 1/4분기 들어 급격히 감소하여

선진국 경기의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질실효환율의 절하추세가 지속된다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1997~1998년도의 상품수출은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82년 이후 최악의 침체를 나타냈으며 그 뒤 1992년 3/4분기까지 1980년대 후반의 높은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선진국의 불황은 그 뒤 시차를 가지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통관기준 상품수출은 1991년에 연평균 10.5%에서 1992년 6.6%, 1993년 7.3%로 그런대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여기에는 당시 개도국 및 미수교국들과의 교역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던 이유도 있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실질실효환율이 절하 추세를 타고 있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7대 교역국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의 연도별 교역가중치와 각국의 대미환율, 그리고 생산자물가지수로 계산한 연평균 실질실효환율은 1990년부터 1996년까지 3.2%, 0.8%, 4.5%, 3.7%, 1.3%, -3.0%, -0.8%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므로 1992년과 1993년의 수출 증가율이 5%를 넘었던 것은 실질실효환율의 상승에 힘입은 바 컸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1997~1998년중 연평균 실질실효환율 증가율은, 원화의 대미환율 절하와 엔화 등 주

〈그림 10〉 선진국 GDP 증가율의 4분기 이동평균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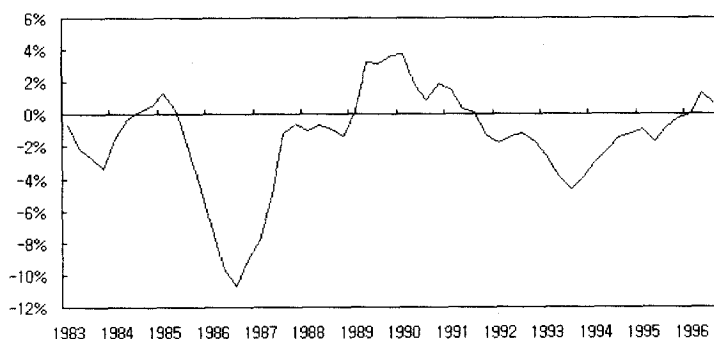


요 통화의 강세에 힘입어 각국의 물가안정 기조와 우리나라 생산자물가의 비교적 높은 상승에도 불구하고 1997년에 6.5%, 1998년에 3.7%로 상당히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에 OECD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1997년과 1998년 각국의 GDP는 미국의 경우 3.6%, 2.0%, 독일 2.2%, 2.8%, 일본 2.3%, 2.9% 영국 3.0%, 3.0%로 성장할 것이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선진국 경기의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질실효환율의 절하 추세가 지속된다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1997~1998년도의 상품수출은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96년 하반기 이후 상품수출이 급감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수출단가의 급격한 하락(1996년 연평균 -12.1%)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수출단가가 하락하게 된 것은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주력수출상품의 국제시세 급락이 중요한 이유였는데 여기에는 국제시장에서의 수급상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1995년 1/4분기 이후 해외 생산자물가, 특히 이들 품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쟁상대국인 일본의 생산자물가가 극히 안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엔화절상과 성장부진으로 인하여 1991년 4/4분기부터 1995년 4/4분기까지 4개년에 걸쳐 한 분기도 빠지지 않고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엔화의 대미 환율은 1995년 3/4분기부터 1997년 1/4분기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절하되어 왔으며, 일본의 성장률도 1996년부터는 장기간에 걸친 침체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되었고 앞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일본의 생산자물가 역시 그동안의 하향 추세

〈그림 11〉 일본 생산자물가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추이



1997~1998년의 기간중 실질실효환율이 절하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환율변동에 의해 상품수입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원유의 국제가격이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상품수입은 과거와 같은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와는 달리 상당기간 동안 증가국면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생산자물가의 이러한 추이 및 향후전망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의 국제시세가 더 이상 급격한 하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수출단가가 급락을 멈추게 된다면 동일한 물량에 대해 달러기준으로 많은 금액의 수출이 달성될 것이므로 금액기준 수출이 회복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들을 종합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통관기준 상품수출은 1997년 하반기부터 1998년의 기간 동안 2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같은 수출의 회복은 시차를 가지면서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경기는 1998년 들어 본격적인 호황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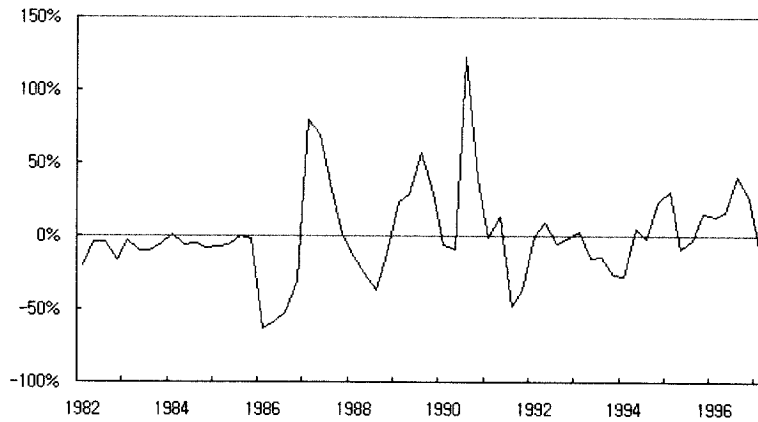
4. 통관기준 상품수입

1997~1998년의 기간중 실질실효환율이 절하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환율변동에 의해 상품수입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우리나라 수입상품의 8~10%를 차지하는 원유의 국제가격이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상품수입은 과거와 같은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96년중에는 국제 원유가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13.3%, 15.9%, 41.2%, 27.0%씩 증가하여 걸프전이 발발하였던 1990년 3/4분기(122.3%)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1997년 1/4분기 들어 국제원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두바이산 원유가를 기준으로 1996년 말의 배럴당 22.2달러에서 1997년 7월말 현재 18달러로 연말 대비 19% 정도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원유가의 하락은 국내 상품수입금액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통관기준 상품수입은 1997년에 연평균 10.3%, 1998년에 15.7% 증가하여 통관기준

〈그림 12〉 브랜트유 가격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추이(1982~1997:I)



상품수출의 증가율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로는 국내 GDP 성장률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1997년 하반기부터 상품수입 증가율이 10%를 넘어서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상품수출 증가율이 상품수입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1996년의 206억달러의 적자에서부터 1997~1998년의 기간중 꾸준히 개선되어 1997년 약 161억달러, 1998년에는 110억달러의 적자로 적자 폭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5. 원화의 대달러화 환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1997년과 1998년의 자본수지 흑자규모를 각각 200억 달러, 220억달러로 가정하였는데 이러한 가정에 따라 1997년중 종합수지는 약 1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뒤 1998년중에는 23억달러 정도의 소규모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종합수지가 1996년의 57억달러의 적자에서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그동안 빠르게 진행되던 원화절하 추세는 다소 누그러질 것이다. 그러나 종합수지는 1997~1998년의 기간중 뚜렷한 흑자를 기록하기도 어려우므로 원화환율이 국제수지에 의해 다시 절상기조로 빠르게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기간중 미국의 성장률이 상당히 높을 전망이므로 이에 따른 달러화의 강세로 말미암아 원화는 절하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원화의 대달러 환율은 1997년에는 연평균 883원 수준을 기록하다가 1998년에는 연평균 910원으로 절하될 것으로 전

1997~1998년중의 생산자물가는 3.7%, 4.5%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수입물가는 6.7%, 8.5%의 상당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상승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망되었다⁵⁾.

6. 소비자물가 및 GDP 디플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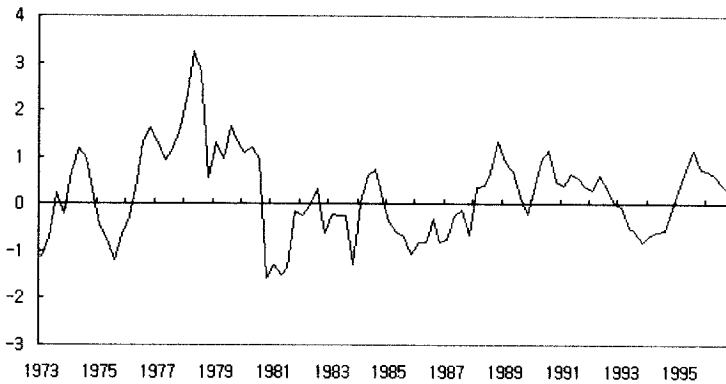
1인당 전산업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7년에 10.7%, 1998년에 11.8%로서 비교적 안정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임금상승에 의한 소비자물가의 상승효과는 예년에 비해 비교적 작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7~1998년중의 생산자물가는 3.7%, 4.5%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수입물가는 6.7%, 8.5%의 상당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는 상승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1997~1998년의 총통화 증가율은 연 16.5%, 15.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 수준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1994~1996년 기간동안의 증가율보다는 높은 것으로서 1997~1998년의 기간에 걸쳐 통화적 요인에 따른 소비자물가의 상승요인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보인다.

한편 GNP 갭은 시차를 가지면서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데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GNP 갭의 4개 분기 이동 평균치는 1994년 4/4분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뒤 1995년 3/4분기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향후 전망에 따르면 이러한 GNP 갭의 감소추세는 1997년 2/4분기를 끝으로 그 뒤부터는 1998년 4/4분기까지 전 기간에 걸쳐 다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GNP 갭의 추이는 1997~1998년의 기간중, 그리고 1998년 이후의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요인을 감안하면 1997년의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4.7%에 그치다가 1998년에는 연평균 6.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1998년에는 내수의 활발한 회복으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연평균 9.3% 상승하였던 199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한편 GDP 디플레이터는 1998년에 7.2%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우선 1997년~

5) 물론 전망기간중 장·단기 자본수지의 추이와 종합수지의 오차 및 누락항목이 가정된 것과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 원화환율의 실제추이가 전망과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림 13〉 GNP 갭의 4개 분기 이동평균치의 추이⁶⁾



1998년중의 총통화평잔 증가율은 16.5%와 15.5% 정도로 가정하고 있으므로 통화적 요인으로 인한 1998년의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1997년에 비해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실질 GDP 상승률은 1998년이 1997년보다 높으므로 실질생산에 의한 GDP 디플레이터의 감소 효과는 1997년보다 1998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명목금리는 1998년이 1997년보다 약 1%p 높게 전망되고 있으므로 금리상승으로 인한 유통속도의 증가가 GDP 디플레이터를 상승시키는 효과는 1997년의 경우보다 1998년의 경우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물가 및 수입물가의 상승률 전망치는 1997년보다 1998년의 경우가 더 높게 나오며 잠재성장률은 1997년보다 1998년이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와 같은 화폐수량식 이외의 요인으로 말미암는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의 효과는 1997년보다 1998년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1997년의 연간 GDP 디플레이터는 4.9%, 1998년에는 7.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1998년의 연간 GDP 디플레이터 전망치인 7.2%는 소비자물가와 마찬가지로 1991년 10.1%를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 될 것이다.

7. 실업률 · 전산업 및 제조업 임금

실업률은 1997년 1/4분기 들어 3.1%를 기록하여 분기별로는 1993년 1/4분기 이래 3년만에

6) 이 그림에서 GNP 갭이 양수이면 경기과열을, 음수이면 경기위축을 의미한다.

실업률이 나타나게 된 요인이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구조변화에 있는지, 아니면 필립스 곡선의 이동에 있는지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업률의 향후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정책방향도 크게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대로 진입하였으며 2/4분기에는 2.5%를 기록하였다. 모형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실업률은 경기변동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로서 실업률의 결정과정상 어떤 장기적 구조변화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구조변화가 발생함으로써 실업자의 발생이 보다 수월해지기 시작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기 필립스 곡선의 이동이 발생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가운데 어떤 요인에 의해 이러한 높은 실업률이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실업률의 향후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도 크게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불변가격 GDP 증가율은 앞서 언급한 대로 1997년에 6.3%에서 1998년에는 7.4%로 증가할 전망이다므로 실업률이 경기회복에 따라 1997년보다 1998년에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본량이 늘어날수록 취업자가 필요하게 되는 관계를 감안한다면 1997년의 총고정자본 형성이 정체상태에 있고 1998년에도 과거의 경험에 비해 증가율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정한 감가상각률(연 6.4%)을 가정하였을 때 자본량 증가율은 1996년의 연 10.52%에서 1997년에 9.49%, 1998년에 8.65%로 1997~1998년의 기간중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자본량 증가율의 둔화추세는 고용창출을 지속적으로 불리하게 할 것이므로 경기회복에 의한 효과가 상쇄되어, 1998년의 실업률은 1997년의 2.4%보다 소폭 증가한 연평균 2.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산업 임금은 1997년 1/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1.6% 증가함으로써 같은 기간중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은 그다지 둔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실업률이 높아지는 분위기라면 임금상승률은 시차를 가지면서 점점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투자, 특히 건설투자는 1997년에 2.0%의 소폭 증가에 그치겠지만 1998년중에는 7.4%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므로 이에 따라 전산업 임금은 금년보다 내년중에 인상 요인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였을 때 1997년중의 전산업 임금상승률은 연

평균 10.7%에 달하여 1987년 연평균 10.14%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겠으나 1998년에 이르면 1997년보다 약 1%p 상승한 1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음으로 제조업 임금은 전산업 임금과 유사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과거의 임금수준과 실업률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통화적 요인에 대해서는 전산업 임금보다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임금은 전산업 임금과는 달리 설비투자의 증가율이 설명력을 가진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설비투자는 1997년에 -2.6%의 증가를 나타내다가 1998년 들어서는 9.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제조업 임금은 1997년보다 1998년에 더욱 높아질 요인이 있다고 예상된다. 그러나 실업률이 전년의 1.98%에서 1997년에 2.4%로 높아짐에 따라 제조업 임금증가율은 1998년중 전산업 임금증가율이 더욱 상승하는 것과는 달리 1998년중에도 1997년의 10.5%와 거의 비슷한 10.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IV. 요약 및 정책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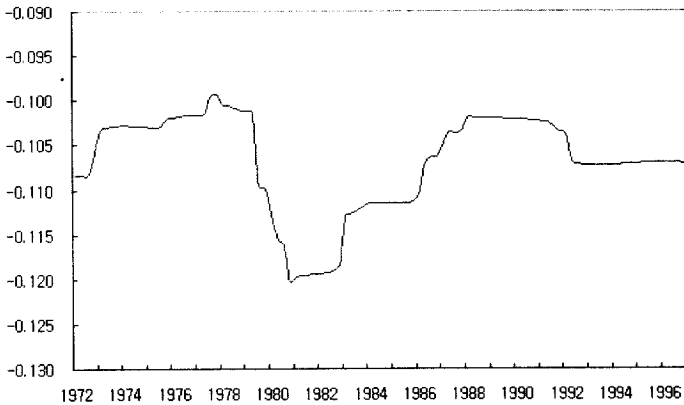
1. 수출 주도에 의한 성장

1997~1998년의 거시경제 전망의 개요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한다는 말로 요약된다. 즉 1997년 하반기부터 통관기준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20%대의 증가율을 유지하는 등, 그동안 침체되었던 수출이 매우 빠르게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높은 증가율은 비교대상인 1996년 하반기 수출실적(통관기준 전년동기 대비 -2.6%)이 매우 부진하였던 것에 대한 반등요인도 있지만 향후의 수출은 단순한 반등의 차원을 넘어 매우 활발할 것이며 이러한 증가세는 1998년까지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997년 1/4분기까지 우리 경제의 장기적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하였다는 징후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수출이 이렇게 활발해진다면 1998년중의 성장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의 증가는 생산성 향상 또는 국제경쟁력 강화에 의해 이루어진다고보다는 주로 선진국 경제의 호황 추세와 실질실효환율 절하 추세가 동시에 지속되는, 수출에 있어서의 좋은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한편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는 그동안 재고 감소가 충분치 못하였고 투자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관계로, 빨라도 1997년 4/4분기에 가서야 증가세로 반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투자도 1997년 하반기에 이르러야 증가세로 반전하기 시작하여

수출의 증가는 생산성 향상 또는 국제경쟁력 강화에 의해 이루어진다고보다는 주로 선진국 경제의 호황 추세와 실질실효환율 절하 추세가 동시에 지속되는, 수출에 있어서의 좋은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그림 14〉 장기적 총요소생산성의 추이(1971:I~1997:I)



연평균 2%대의 저조한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소비 역시 1997년 4/4분기에 가서야 비로소 6%대의 증가가 시현되는 등 1997년의 내수는 연중 내내 부진을 면치 못함으로써, 1997년중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GDP 증가율이 시사하는 경기회복보다는 미미한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998년부터는 수출회복이 민간소비 및 설비·건설투자의 회복으로 이어져 1998년중의 체감경기는 상당히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4년 이후 우리나라 거시경제를 회고하자면 1994년의 경기회복과 1995년까지의 경제호황은 거의 수출호조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이후 1997년 상반기까지의 경기불황 역시 수출부진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전망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통관기준 상품 수출이 1997년 하반기부터 다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게 된다면 1996년 2/4분기에서 1997년 상반기까지 부진했던 수출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국내적 순환요인에 기인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였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의 수출부진 요

인 가운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부분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출회복이 다시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향후의 지속적인 성장을 약속할 만큼 안정적인 수출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1996년~1997년 상반기까지의 수출부진이 일시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1997년 하반기 이후의 수출회복도 일시적 현상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특히 전자(반도체 포함),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조선 등 6대 주력 수출품목이 총수출의 절반을 넘고 있는 우리의 수출구조는 우리 경제가 외부적 충격에 따라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위험분산에 있어서는 대단히 불리한 구조라 하겠다.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말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구조적인 문제를 의미한다면 수출구조의 편중이라는 말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구조적인 문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경기변동의 경험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이러한 편중적인 수출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몇몇 수출품목의 수급상황에 따라 국민경제 전체가 또 다시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상황은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물가불안의 가능성

1997년중의 총고정자본 형성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부진에 따라 거의 정체상태에 놓일 것이며 총고정자본 형성의 부진은 향후의 잠재적 생산능력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1997년중 6.7%이던 잠재성장률이 1998년에는 6.5%로 소폭 하락할 것이다. 반면에 GDP 기준 실질성장률은 1997년중 6.3%에 달하다가 1998년에 이르러서는 7%대를 넘어서게 되어 1998년의 경기는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압력요인의 발생으로 인하여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은 1996년의 3.4%에서 1997년에 4.9%, 1998년에는 무려 7.2%까지 상승할 것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7년의 4.7%에서 1998년에는 6.7%까지 상승하여 1995년부터 지속되어 온 물가안정 기조가 흔들릴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플레이션 문제는 1998년중 거시경제 정책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성장률이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그다지 높다고 하기 어려운 7.4% 정도가 뒤편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1997년 하반기에서 1998년까지의 경제성장이 생산능력 향상보다는 국내의 수요증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임금상승률, 명목금리 등 우리 경제의 애로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소위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해소에 있어서는 별다른

수출회복이 다시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향후의 지속적인 성장을 약속할 만큼 안정적인 수출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편중적인 수출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몇몇 수출품목의 수급상황에 따라 국민경제 전체가 또 다시 일희일비하는 상황은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진전이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1998년도의 우리 경제의 모습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조만간 경기회복이 뚜렷해진다면 곧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1998년의 재정은 본고의 전망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보다 긴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1998년중의 총수요를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1997년 하반기에는 체감경기의 회복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일 것이므로 통화긴축을 시도하는 것은 호응을 얻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되지만, 물가안정 기조의 유지를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사료된다. □□

일본의 재정구조 개혁



국 중 호 /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1. 서론

1997년 6월 20일 우리 정부는 21세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공공부문, 기업 부문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국가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가과제 중에서 재정개혁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정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것이다. 이같이 재정개혁을 포함하여 여러 분야에 걸친 개혁은 세계적인 추세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OECD 등 많은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본의 재정구조 개혁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과제와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일본은 구체적으로 재정상태가 어떠한 여건하에 놓여 있었기에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가,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재정구조 개혁의 목표와 기준 그리고 내용은 무엇인가, 또한 일본의 재정구조 개혁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등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일본은 1997년 6월 3일에 「재정구조개혁 최종보고」를 발표한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재정재건법안(가칭)」을 입안중에 있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재정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재정적자의 누증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정구조 개혁의 최대 현안을 재정건전화의 실현에 두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자 누증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목전에 다가온 21세기에 활력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구조 개혁의 기초는 한마디로 '재정적자 감축을 통한 세대간의 불공평 해소와 경제활력의 회생' 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은 1996년 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한 누적 공적채무잔액이 442조엔으로 GDP 대비 90%에 달하고 있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최악의 수준으로 이러한 재정적자 누증은 세대간의 불공평, 소비지출의 감소로 인한 경기후퇴, 재정의 경직화, 경제의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실업증가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재정적자의 누증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정구조 개혁의 최대 현안을 재정 건전화의 실현에 두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자 누증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눈앞에 다가온 21세기에 활력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재정은 일본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1996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채 발행잔액은 26조원으로 GNP 대비 6.6% 수준이다. 이는 일본의 47.6%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다. 이처럼 국채잔액 비중이 낮은 것은 1984년 이후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하겠다. 반면 세출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와 경제개발지출의 비율은 일본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재정구조 개혁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가령 현재 우리가 일본보다 복지지출 수준이 적다고 하여 우리도 그 수준만큼 지출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재정의 경직화와 세대간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주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정규모에 맞추어 복지비 지출을 늘려 나가는 데 재정개혁의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외채, 무역적자 및 방위비 지출이 높은 경제구조이므로, 재정개혁의 기본방향은 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복지비 지출 증가 및 남북통일 대비를 위

1) 김성진, 『1997년 한국의 재정』, 매일경제신문사, 1997, p. 39.

한 지출비용을 마련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II. 일본 재정구조 개혁의 추진배경과 그 목표

1. 재정구조 개혁의 추진배경

일본은 1973년의 오일쇼크에 의한 경기침체와 1990년대 초의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투자 증액 및 감세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하면서 일본 정부는 많은 액수의 공채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차후에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일본은 이와 때를 같이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서구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적자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말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친 누적 공적채무잔액은 442조엔으로 GDP 대비 90%에 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물가안정과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고도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와 높은 저축률 그리고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 기인한다. 즉 일본에서는 이들 부문의 자금 공급에 의해 재정적자를 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상승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소자녀화(少子女化)가 사회보장비를 비롯한 세출의 증가와 저축의 감소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재정적자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상승 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1996년 8월에 발표된 『재정구조개혁백서』에 의하면 일본이 재정개혁을 실시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2025년 일반정부(중앙+지방) 규모는 국민소득 대비 73.4%에 이르고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14.7%(누적적자는 153.4%),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14.3%로 쌍둥이 적자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미국이 경험한 재정적자의 GDP 대비 3%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향후 일본의 경제 및 재정구조가 얼마나 심각해지는가를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러한 불안요인의 대두에 대비하고 활력 있는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재정 건전화를 목표로 재정구조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소자녀화가 사회보장비를 비롯한 세출의 증가와 저축의 감소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재정적자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상승 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재정적자 누증에 의한 부작용

일본의 재정구조 개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재정적자의 누증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정적자 누증에 의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은 활력 있는 경제 사회 실현에 큰 걸림돌이 되므로 재정적자의 해소를 위한 재정구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첫째,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채비를 채우기 위해 증세를 하게 되는데 이는 세대간의 불공평을 초래하며, 소비지출의 감소를 가져와 경기를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재정적자 누증은 금리를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민간설비투자를 억제하는 클라우드잉 아웃 효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경기후퇴를 초래한다.

셋째, 재정적자가 누적되면 재정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신용이 실추되어 엔화의 하락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수출은 증가하겠지만 수입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국민생활 수준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넷째, 재정적자의 누증에 따른 무리한 공채비 부담으로 재정의 경직화 및 국내경제의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실업률 상승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3. 재정구조 개혁의 목표

일본의 재정구조 개혁이 지향하고 있는 기본목표는 고령화·소자녀화 등의 진전으로 인한 재정수요의 증대가 경제 전체의 안정과 활력의 상실을 초래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1세기 초반 일본의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하 수준으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의 재정적자가 GDP의 6.3%(OECD 전망치)임을 고려할 때, 2005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또는 균형)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년 0.4%(또는 0.8%)씩 재정적자를 감축시켜 나가야 한다. 이때 GDP 대비 3%의 재정적자라는 기준은 EU에서 통화통합 참가의 최저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이는 GDP 대비 채무잔고의 비중을 상승시키지 않기 위한 이론적인 값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먼저 중앙정부의 재정 건전화화를 위한 제1단계에서는 수익과 부담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2~3년 이내에 국채비를 제외한 세입·세출의 균형을 달성하고, 제2단계에서는 21세기 초두까지 특례공채(적자공채)의 발행을 억제하여 공채의존도를 줄여 나가며, 마지막으로 공채잔고가 누증되지 않도록 재정체질을 구축하여 채무잔고를 체감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이때 '공채발행액이 누증되지 않는다'는 것은 「신규발행채의 발행액=기발행채의 순상환액」이 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기본 방향은 경제규모를 감안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세출 신장률을 GDP 신장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에서도 국민경제에서 공적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하는 것을 강력히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²⁾. 특히 일본은 2005년을 재정적자가 해소되는 재정건전화의 전환점(turning point)으로 보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III. 재정구조 개혁의 내용

일본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을 집중개혁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대폭적인 재정적자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개혁의 주요 내용을 부문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

사회보장 부문 개혁의 기본방향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회보장 관계비용의 당연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그 금액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다. 특히 집중개혁 기간 동안 당연증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폭 삭감할 계획이다. 즉 전년도 대비 사회보장비용의 신장률을 고령자수의 증가에 의한 부득이한 영향분(전체의 2% 정도 이하)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이다. 1998년도 예산에서는 일반세출을 1997년도 대비 마이너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약 8천억엔 이상의 당연증가분에 대해 5천억엔 이상을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 관련부문의 주요 개혁 내용은 <표 1>과 같다.

2) 참고로 일본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국민부담률의 상승을 고령화의 정점인 2020년까지 50% 0 하로, 21세기 초반에는 45% 정도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1993년 행정개혁심의회 최종담신).

〈표 1〉 사회보장 관련 부문의 개혁내용

	개혁내용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득의 증가율 범위 내로 국민의료비의 신장률을 억제한다는 기본방침하에 의료제공 체제 및 의료보험제도 양면에 걸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종합적·단계적으로 추진 ○ 이를 위해 제1단계로서 1997년에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을 실시하고, 차후 집중개혁기간 동안 다음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가능한 한 1998년부터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약값 기준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 진료수가의 진료총액 지불방식과 정액 지불방식과의 최선의 조합 - 노인보건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 대학의학부 정원 축소 및 의사국가시험 합격자수 억제 - 지역차를 고려한 전체적인 병상수의 축소, 의료기관의 기능분담과 의료기관간의 연계체계 구축 - 국민건강보험, 정부관장건강보험, 조합건강보험 등 보험자기능의 강화 및 제도운영의 안정성 재검토 - 고령자 등을 배려하나 급부와 부담 공평 등의 관점에서 환자의 정률부담을 최대한 실현 - 저소득자의 입장을 고려하나 재택요양 환자와 입원 환자와의 공평을 도모하고 연금제도와 연계하여 환자부담을 재검토 - 국립병원 요양소의 폐지 및 민간으로의 이양 추진
연금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억제한다는 관점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득자에 대한 급부, 시설 입소자에 대한 급부, 슬라이드 방식의 변경 및 재직노령연금 등을 검토하고 지급개시 연령, 급부 수준 등을 조정 - 현행의 단계적 보험료율을 재검토: 세대간·세대내의 부담을 공평화한다는 관점에서 총보수제의 도입과 이에 맞는 보험료율 개정 ○ 기초 연금의 국고부담률 인상은 재정재건 목표 달성 이후로 연기 ○ 고용유동화 등에 대응하여 자조노력을 촉진하도록 기업·개인연금제도 정비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호(介護) 보험 법안의 성립 추진 - 각종 규제완화, 서비스 내용의 정보공개 및 복지서비스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 추진 - 시설 정비비, 운영비 보조 재검토
고용보험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연령 구직자의 급부 폐지 등 고용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 자기책임원칙하에 실업급부에 관계되는 국고부담을 재검토하여 1998년부터 실시 - 이전(移轉) 취직자용 주택이나 고용복지 시설의 신설은 불허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험 사무 비용의 절감과 합리화 ○ 일정 수입 이상의 고령자 등에 대한 연금, 의료 급부의 재검토

2. 공공투자

소자녀화와 고령화에 따른 부담을 후세대에 남기지 않기 위해, 21세기 초까지 사회자본의 대부분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공공투자 기본계획의 계획기간³⁾을 3년간 연장하여, 공공투자 총액을 600조엔 규모에서 470조엔 정도로 투자 규모의 실질적인 축소를 꾀한다.

가. 공공사업 관계 장기계획

계획책정 이후 사정이 많이 변화한 주택에 대해 그 여건변화나 재정구조 개혁의 취지에 입각하여 공적부문의 관여 정도를 재검토하고, 1997년도 말로 계획기간이 종료되는 도로정비, 급경사지 붕괴대책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정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감축을 도모한다. 그 외의 장기계획에 있어서는 계획기간을 연장(토지개발은 4년, 그 밖의 장기계획은 각각 3년)하여 투자 규모의 실질적인 감축을 꾀한다.

나. 공공공사의 건설비용

일반경쟁입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공공사의 건설비용은 1997년도 이후 3년간 적어도 10% 이상 감축한다.

다. 일본 경제의 활력 유지를 위한 경제구조 개혁의 조속한 추진

주민과 관계가 깊은 생활 관련 사회자본정비사업을 착실히 실시하며, 중앙의 보조대상을 축소한다. 국가조성사업은 광역적인 사업, 국가사업 최저한의 국가사업(national minimum) 확보에 필요 불가결한 분야, 국가투자계획(national project)에 관련되는 사업 등으로 한정하여 국가와 지방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증진한다.

집중개혁 기간중의 공공사업 예산은 경제구조 개혁 관련 사회자본(고규격 간선도로 등 거점 공항, 중추·중핵 항만, 시가지 정비 등)과 물류의 효율화 대책에 도움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상대적으로 정비가 지체되고 있는 분야 및 지역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국토의 균형된 발전 및 정비 수준의 지역간 격차를 시정한다. 또한 1998년도 예산편성시 물류의 효율화를 위한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자본정비 사업간의 연계를 도모한다.

3) 당초 공공투자 기본계획은 계획기간을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으로 하여 사회자본 정비의 기본적 방향을 보이는 데 있었고, 투자총액은 600조엔(단력규모 30조엔을 포함하면 630조엔)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 공공투자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600조엔 규모에서 470조엔 규모로 축소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교예산에 관해서는 아동·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합리적 운용, 수익자 부담원칙, 중앙과 지방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비용 부담 등의 관점에서 의무교육, 국립학교, 사학조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라. 공공투자 예산

집중개혁 기간중에 각 연도의 예산수준을 인하한다. 1998년의 공공투자 예산은 전년도 대비 7% 감액된 액수를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마. 도로특정제한

공공투자 예산 전체가 억제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중량세의 중앙정부분 8할 상당액에 대하여 국민에게 적절한 세부담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3. 문교예산

문교예산의 경우 아동·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합리적 운용, 수익자 부담원칙, 중앙과 지방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비용 부담 등의 관점에서 의무교육, 국립학교, 사학조성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첫째, 집중개혁 기간 동안 퇴직자수를 웃도는 정원감소가 발생하는 도도부현(都道府縣)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둘째, 집중개혁 기간 동안 국립학교 조직에 대해 재검토하는 동시에 수업료 조정, 대학 사무조직의 일원화, 정원 삭감, 철저한 스크랩 앤드 빌드(scrap and build)⁴⁾ 등으로 국립학교 특별회계 편입을 전년도 수준 이하로 억제한다. 특히 1998년도 이 부문의 일반세출을 1997년도보다 감액된 액수로 과감히 억제한다.

셋째, 아동·학생수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사학조성에 있어서도 경상비 조성을 전년도 수준 이하로 억제하고 조성 총액을 엄격히 통제한다. 특히 1998년도 이 부문의 일반세출을 1997년도보다 감액된 액수로 과감히 억제한다. 한편 특색 있는 교육 연구 프로젝트 조성에 중점적으로 배분한다.

4) 이미 수립된 사업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방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총액 25조 1,500억엔)에 대해 금후 3년간 방위관계비 수준을 억제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물건비 총액(약 9조 2천억엔)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요 경비에서 감축하는데 올해(1997년) 안에 그 내용을 재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집중개혁 기간 동안 방위관계비에 관해서는 전년도 수준 이하로 억제하는데, 특히 인건·양식비, 세출화 경비, 일반 물건비 등 온갖 경비를 절감하고 1998년도 방위관계비를 1997년도 이하 수준으로 억제한다. 이와 동시에 장비의 조달보급체제를 합리화·효율화하고 조달 가격을 억제하도록 노력한다.

5. 정부개발원조

재정이 위기 상황에 있음을 고려하여 정부개발원조(ODA)를 양에서 질로 전환하고 집중개혁 기간 동안 ODA 예산은 각 연도마다 감액을 도모한다. 특히 1998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10% 감액된 액수를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양적 목표를 수반하는 새로운 중기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며 피원조국민으로부터 올바르게 평가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평가시스템의 확립, 비정부조직(NGO) 등 민간과의 연계 추진, 철저한 정보공개 등을 도모한다.

6. 농림수산

농림수산 관련 예산에 관한 주요 개혁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7. 청산사업단 채무

채무잔고가 28조엔에 이르는 구국철(舊國鐵) 채무문제를 본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여당 내에서 1997년 중에 이를 입법화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하였다.

처리방안은 자주재원에 의한 채무상환, 채투자금의 조기 상환 내지는 금리 감면, 상속세 경감 등의 특전이 첨부된 무이자국채의 발행, 세출 전반에 대한 재검토, 교통기관 이용자 전체의 부

일본은 재정이 위기 상황에 있음을 고려하여 정부개발원조(ODA)를 양에서 질로 전환하여 양적 목표를 수반하는 새로운 중기목표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집중개혁 기간 동안 ODA 예산을 각 연도 수준 이하로 감액할 계획이다.

〈표 2〉 농림수산 부문의 주요 개혁내용

	개혁내용
UR농업 합의관련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 농촌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대책기간 2년 연장 ○ 총사업비 6조 100억엔의 전체 사업내용에 대해 지금까지의 실적 검증을 토대로 새로운 국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경영 확립 ○ 농업 · 농촌 정비사업과 기타사업의 사업비 비율을 5:5로 함
주요식량 관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법」 취지에 입각하여 쌀에 대해 정부비축 수준의 조기 적정화 추진 ○ 쌀값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을 적정하게 설정 ○ 자주 유통미 조성 등을 시장원리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 ○ 학교 급식용 미곡값 인하를 폐지하는 방향에서 재검토 ○ 집중개혁 기간 동안 주요 식량 관계비를 전년도 수준 이하로 함
국유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림의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발휘에 유의하면서 경영 및 조직 등의 근본적인 개혁 실시 ○ 삼림정비를 위한 재정조치, 누적채무처리 방안, 삼림의 수익에 대응한 비용 부담 등을 폭넓게 검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 관계 보조금, 협동농업보급사업 교부금 등의 전반적 재검토

담, JR에 의한 부담, 철도이용세 등의 형태에 의한 JR 이용자의 부담, 휘발류세 등 도로재원의 활용, 청산사업단 채무의 일반회계로의 대체, 증세에 의한 국민 부담 등이다.

8. 정비 시간선

정비 시간선에 대해 정부 및 여당 검토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다.

첫째, 수지채산성의 예상, JR의 임대료 등의 부담, 병행 재래선의 경영 분리에 관한 지방공공

단체의 동의, JR의 동의 등 제조건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도록 한다.

둘째, 이러한 검토를 하는 경우, 수지채산성의 시산방법 및 기초데이터, 관계 지방자치단체, JR의 의견 등이 공개되도록 하여 국민의 납득을 얻도록 한다.

셋째, 신규 구간의 착공은 집중개혁 기간중 억제하여 재정구조 개혁의 추진과 모순되지 않도록 한다.

9. 과학기술 예산

과학기술 예산에 관한 주요 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핵융합·우주개발 등의 대형 프로젝트에 있어서 집중개혁 기간 동안에는 국제 열 핵융합 실험로(ITER) 계획을 국내에 유치하지 않는 등 신규 프로젝트에 착수하지 않고,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경우에도(예컨대 「몬주」 등 문제가 있는 고속 증식로) 전면적으로 제검토한다.

둘째, 국립시험 연구기관, 특수법인 등 국가의 연구기관 중 국가적 중심연구기관(national center)로서 정비되어야 하는 기관 외에는 집중개혁 기간중에 통폐합하고 동시에 국가 연구기관·제도의 중복 배제, 중점화·효율화 등을 통해 예산을 감축한다.

셋째, 외부평가의 실시, 평가결과의 공표 등을 통해 연구자금 배분의 중점화·효율화를 추진한다.

넷째, 집중개혁 기간 동안 과학기술진흥비도 다른 경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증가액을 대폭 억제한다. 특히 1998년도 과학기술진흥비의 일반세출을 1997년도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기술진흥비 신장률을 5% 이하로 한다.

10. 에너지

에너지 예산에 관한 주요 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대책비도 집중개혁 기간 동안 전년도와 동일 금액으로 책정하며, 특히 1998년도 예산에 있어 일반세출을 1997년도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과감히 억제한다.

둘째, 신에너지·성(省)에너지 대책을 비롯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책을 추진한다는 목표하에 석탄 및 석유 에너지 수급구조 고도화 대책 특별회계의 세출 전반을 재평가하고 계상

일본은 과학기술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원자력·핵융합·우주개발 등의 대형 프로젝트에 있어서 집중개혁 기간 동안에는 신규 프로젝트에 착수하지 않고, 진행중인 프로젝트도 문제가 있는 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액을 압축한다.

셋째, 동력로·핵연료 개발사업단의 조직·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업무의 재검토와 경비의 감축을 도모한다.

넷째, 전원개발촉진 대책 특별회계에 대해 세출 전반을 재평가하고 전원입지 대책, 전원다양화 대책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한 전원입지에 대한 정보공개, 환경평가 등 재정 이외의 시책도 중요시한다.

11. 중소기업 대책

성역 없는 세출의 개혁과 감축을 위해 집중개혁 기간 동안 중소기업대책비도 전년도와 동일 금액으로 한다. 특히 1998년도 중소기업대책 일반예산을 1997년도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과감히 억제한다.

또한 중소기업 대책 예산에 있어서도 보조금 전체에 대해 재평가하고, 중소기업의 활력이나 지방의 역할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도도부현 상공회연합회의 인건비 보조 등 세출 전반을 재검토한다.

12. 지방재정

가.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추진

중앙·지방 쌍방의 세출억제와 관련되는 시책을 재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의 재정재건 목표기간 동안 교부세 특별회계 차입금이나 재원 대책 채무 등을 감축하여 중앙 및 지방의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3% 이하 수준이 되도록 한다. 또한 교부세 특별회계 차입금, 재원 대책 채무 등을 비롯한 고액의 채무잔고를 조속히 감축하며 지방채 발행규모를 제

한한다.

나. 지방재정계획의 책정

지방단독 시책의 제한 등을 통해 지방 일반세출의 신장률을 중앙과 동일한 기초하에서 명목성장률 이하로 조정하고 1998년도 지방재정계획에서 지방 세출을 중앙정부와 같이 전년도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제한한다. 투자적 경비와 관련된 단독사업도 전년도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세출을 억제한다.

다. 지방교부세의 산정이나 지방채의 배분

지방단독사업비를 억제하여 지방교부세의 산정, 지방채의 배분 등에 있어서 각 지방공공단체의 세출 억제를 촉진하고 지방교부세제도, 지방채제도 그리고 각 지방공공단체 등의 독자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라. 지방의 재정건전화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추진에 유의하면서 각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봉급·정원의 적정화, 사무사업의 재검토, 민간위탁, 외곽단체의 정리 축소, 공공사업의 비용 감축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집중개혁 기간 동안 지방공공단체의 행정체제 강화 및 시정촌의 통합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

13. 보조금

가. 보조금의 정비

보조금(부담금, 교부금, 보급금, 위탁비 등을 포함)에 대해 성역 없는 재검토를 하고, 각 부처가 관할하는 보조금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보조금의 실정에 따라 보조목적, 대상과 같은 교부결정 개요를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보조금

제도적 보조금(가칭)의 삭감·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정을 포함하여 기존 시책이나 사업을 재검토하고 보조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 제도 개정의 구체적 대

중앙·지방 쌍방의 세출억제와 관련되는 시책을 재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의 재정재건 목표기간 동안 교부세 특별회계 차입금이나 재원 대책 채무 등을 감축하여 중앙 및 지방의 GDP 대비 재정적자규모가 3% 이하 수준이 되도록 한다.

상은 국가의 통치·안전 및 대외관계의 처리 등 오로지 국가의 이해에 관한 것(국정 선거집행경비, 외국인 등록사무위탁비 등),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생활보호비 부담금, 의무교육비 국고 부담금 등), 재해구조·복구에 관계되는 것(재해구조비 부담금 등), 제도 개정을 포함하여 별도, 종합적인 수정이 행해지는 것(공공사업 관계비 등) 등이다.

한편 기타 보조금은 집중개혁 기간 동안 매년도에 각 부처에서 10%씩 삭감하도록 한다.

다. 특수법인·인가법인에 대한 보조금

특수법인·인가법인 보조금은 사회적 의의가 낮은 사업을 폐지하는 등 개별적으로 법인의 사업을 철저히 재평가하여 삭감·정비한다.

라.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법률에 의거한 공익법인을 비롯한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은 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기존 시책이나 사업 자체를 재평가하여 삭감 및 정비를 꾀하고, 기타 보조금은 집중개혁 기간 동안 매년도 각 부처에서 10%를 삭감하도록 한다. 특히 공익법인이 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법인의 역할, 사업운영 방법 등을 재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에만 한정적으로 지원한다.

마. 신규 보조금의 억제 등

신규 보조금의 설치를 억제함과 동시에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보조금의 파기·재정립(스크랩 앤드 빌드)의 원칙을 준수한다. 신규 보조금은 5년 이내의 만기를 설정하고, 만기시에는 원칙적으로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바. 소액 보조금의 채택 제한

보조효과와 비용을 비교하여 보조금마다 채택 기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이지 않은 보조금은 채

택하지 않기로 한다.

사. 통합화, 사무절차의 간소화 등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검토 등을 토대로 계속하여 보조금의 통합화, 일반재원화 등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보조대상 자산의 전용 등에 있어서의 사무절차를 간소화·합리화한다.

14. 정원 · 인건비

우선 국가의 사무·사업 재평가에 관한 논의를 지켜보면서 공무원의 정원삭감 계획을 재검토한다. 특히 1998년도에는 각 부처 모두 신규 증원을 억제하고 정원삭감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인사원의 권고제도를 유지·존중하여 적절히 대처한다.

한편 양원의회비(兩院議會費), 국회의원의 세비는 양원 의장하에 두고, 현재의 재정사정에 비추어 조속히 검토한다.

15. 기타

이상의 예산 외의 경비에 관해서도 집중개혁 기간 동안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며 특히 국가가 실시하는 시설정비사업에 있어 신관저의 정비 등 시설규모가 대규모인 경우에는 집중개혁 기간 동안 새로운 착공을 제한하고 소요재원을 재평가하여 엄격히 제한한다.

오키나와 진흥 및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관한 미특별행동위원회(SACO)」 관련 사업은 착실히 실시하는 반면 수도기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경위 및 재정구조 개혁의 모든 분야에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한다.

IV. 한국과 일본의 재정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의 재정구조 개혁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기 전에 우선 양국의 재정구조를 세출과 세입면에서 간단히 비교해 보기로 한다.

보조금에 대해 성역 없는 재검토를 하고, 각 부처 소관의 보조금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보조금의 실정에 따라 보조목적, 대상과 같은 교부결정 개요를 공표하는 등 보조금 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 세출비교

1996년도 양국의 세출부문을 비교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가. 경제개발 관련비

1996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세출 중 경제개발에 대한 지출비중은 22%로 이에 상응하는 일본의 공공사업 관계비 비중 11%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정부에 의한 유효수요의 창출이 높은 경제라고 할 수 있다.

<표 3> 한국과 일본의 세출비교(1996)

한국			일본		
항목	금액(조원)	구성비(%)	항목	금액(조엔)	구성비(%)
방위비	12.7	21.7	방위 관계비	4.8	6.5
교육비	11.1	18.8	문교 및 과학진흥비	6.2	8.3
사회개발	5.0	8.5	사회보장 관계비	14.3	19.0
경제개발	13.1	22.3	공공사업 관계비	9.7	11.3
일반행정	6.3	10.6			
지방재정교부금	6.4	10.8	지방교부세교부금	13.6	18.1
채무상환 및 기타	0.9	1.6	기타 경비	5.1	6.7
재특지원	3.3	5.7	국채비	16.4	21.8
전체	58.8	100	전체	75.1	100

자료: 재정경제원, 『조세개요』, 1997.
石弘光, 『財政構造改革白書』, 1996.

나. 경직성 경비

우리나라는 방위비가, 일본은 국채비가 각각 경직성 경비의 주요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국채비는 정책적 경비로서 총세출에서 22%를 차지하여 다른 항목에 대한 지출을 제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의 대치상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방위비를 일정 규모로 유지시켜야 하는 데 비해 일본의 경우 국채비가 계속 일정 규모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비는 아니라는 점이 다르다.

다. 교육 관련 지출비

우리나라의 교육비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산의 19%를 차지하는 중요한 항목이다. 이에 더하여 사회개발비 항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 및 문화지출비와 경제개발비 항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과학기술비까지 고려한다면 일본의 문교 및 기술진흥비(6.5%)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라. 사회보장 관련 지출

우리나라는 사회개발비 항목에 사회보장계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본의 사회보장관계비가 우리의 사회개발비에 대응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사회보장관계비는 총세출의 19%인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개발비는 총세출의 8.5%로 일본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지출요구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세입비교

우리나라와 일본의 세입구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표 4〉).

첫째,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소득세의 비율이 낮고 일본의 소비세에 비해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둘째, 일본은 공채수입의 비중이 28%인 반면 우리나라는 세입의 대부분을 조세수입에 의해 조달하고 있다. 셋째, 양국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해 보면 1994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19.8%, 일본은 18.1%로 우리가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⁴⁾.

그러나 조세부담에 사회보장부담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을 비교해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⁵⁾에 있다.

4) 재정경제원, 『조세개요』, 1997 참조.

5) 1996년 말 현재 국민부담률은 우리나라 21.3%, 일본 37.2%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사회보장부담은 사회개발의 항목에서 교육 및 문화지출비를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재정경제원, 『조세개요』 1997과 『예산개요』, 1997 및 石弘光, 『財政構造改革白書』, 1996 참조)

우리나라는 방위비가, 일본은 국채비가 각각 경직성 경비의 주요항목인데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방위비를 일정 규모로 유지시켜야 하는 데 비해 일본의 경우 국채비가 계속 일정 규모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비는 아니라는 점이 다르다.

〈표 4〉 한국과 일본의 세입비교(1996)

(단위 : 조원, 조엔, %)

한국			일본		
항 목	금액	구성비	항 목	금액	구성비
국세	64.9	97.2	조세 및 인지수입	51.4	68.4
소득세	14.8	22.8	소득세	19.3	25.7
법인세	9.4	14.5	법인세	13.5	18.0
부가가치세	16.8	25.9	소비세	5.9	7.9
상속세	1.0	1.5	상속세	2.6	3.4
인지세	0.4	0.6	인지수입	1.9	2.6
관세	5.3	7.9	공채금수입	21.0	28.0
교육세	4.1	6.1	특례공채	12.0	16.0
교통세	4.8	7.2	건설국비	9.0	12.0
기타수입	1.8	2.8	기타수입	2.5	3.4
전체	66.8	100.0	전체	75.1	100.0

자료: 재정경제원, 『조세개요』, 1997.
石弘光, 『財政構造改革白書』, 1996.

V. 정책적 시사점

1. 재정구조 개혁의 문제점

1997년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정구조 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포괄재정조정법(OBRA 90/93), 프랑스의 재정 5개년 계획법(1994년 제정)에 비해 세입면에서의 개혁규정이 없고 둘째, 제2의 예산이라 불리는 재정투융자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없다. 셋째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 등 세출팽창의 요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결여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재정구조 개혁을 구속력을 갖고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구조개혁법안(가칭)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다른 개혁과의 연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구조 개혁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나갈 수 있을지가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일본이 추진한 개혁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2. 우리나라의 특수성

일본 경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안정성장과 적자재정에 진입하였으며, 복지증대를 위한 지출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세대간의 불공평 및 국민생활 수준의 저하 등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은 전반적인 재정구조 개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실정은 일본과 매우 다르고, 재정구조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재정개혁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일본과 다른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먼저 살펴보고 상이한 여건하에서 일본의 재정구조 개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외채의존형 경제이고 그 외채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채규모는 1980년 말 현재 272억달러로 GNP 대비 44.9%였으나 1986년 이후 국제수지의 호전에 힘입어 1989년 말에는 294억달러로 GNP 대비 13.3%로 호전되었다. 그러나 그 후 외채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1996년 말 현재 1,020억달러로 GNP 대비 21% 수준에 이르고 있다.

둘째, 일본은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제인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적자경제로서 무역적자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993년 말에 3억 8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1994년 이후 다시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여 1996년 말 현재 23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셋째, 일본 경제는 오일쇼크 이후 안정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고성장 경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995년 9.0%, 1996년에도 6.7%로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재정구조 개혁을 참고로 민간주도의 고성장 경제, 고저축률 경제를 유지하면서 대외채무를 줄여 나가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재정구조 개혁의 기본방향은 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필요하게 될 대규모 재원확보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과의 대치상황하에서 방위비 등 경직성 경비가 많으며 통일이 달성될 경우 재정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 일본과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3.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고성장 경제, 고저축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저성장 경제에 대비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최근 우리나라도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저성장 경제에 진입한다면 세수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연금·의료 등 복지재원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도 가까운 시일내에 일본형의 구조조정을 겪게 될 것이므로 일본의 재정구조 개혁으로부터 많은 시사를 얻어야 할 것인바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만약 경기침체가 지속된다 하여도 일본과 같은 공채발행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채발행 정책은 현재 일본이 안고 있는 재정 경직화와 세대간의 부담 불공평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유도의 경기조정(투자)정책이 고성장 경제를 계속하여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정이 관여하는 범위를 민간경제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유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규제완화는 이러한 환경정립을 위한 한 수단이다).

셋째, 안정성장 경제로의 진입에 대비하여 현재 서둘러야 할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정비이다. 일본의 연금제도는 납입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은 보험금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험료 인상, 급부율 인하 등을 핵심으로 한 연금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경제 및 재정규모에 맞지 않은 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래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거울 삼아 재정규모에 맞는 복지비 지출을 늘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재 선진국보다 복지수준 지출이 적다

고 하여 우리도 그 수준만큼 지출한다면 이는 오히려 재정경직화와 세대간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비극적 시나리오지만 만약 저성장 경제, 높은 복지재원 구조 그리고 심각한 외채수준 (즉 저성장, 고복지, 고외채)이라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르며, 여기에 남북통일로 인한 거대한 재정수요가 가세하는 경우 재정상황은 파국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본의 재정구조 개혁을 참고로 민간주도의 고성장 경제, 고저축률 경제를 유지하면서 대외채무를 줄여 나가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재정구조 개혁의 기본방향은 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필요하게 될 대규모 재원 확보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

여신전문 금융산업의 특성, 현황 및 개편과제



이 기 영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 여신전문 금융산업의 특성과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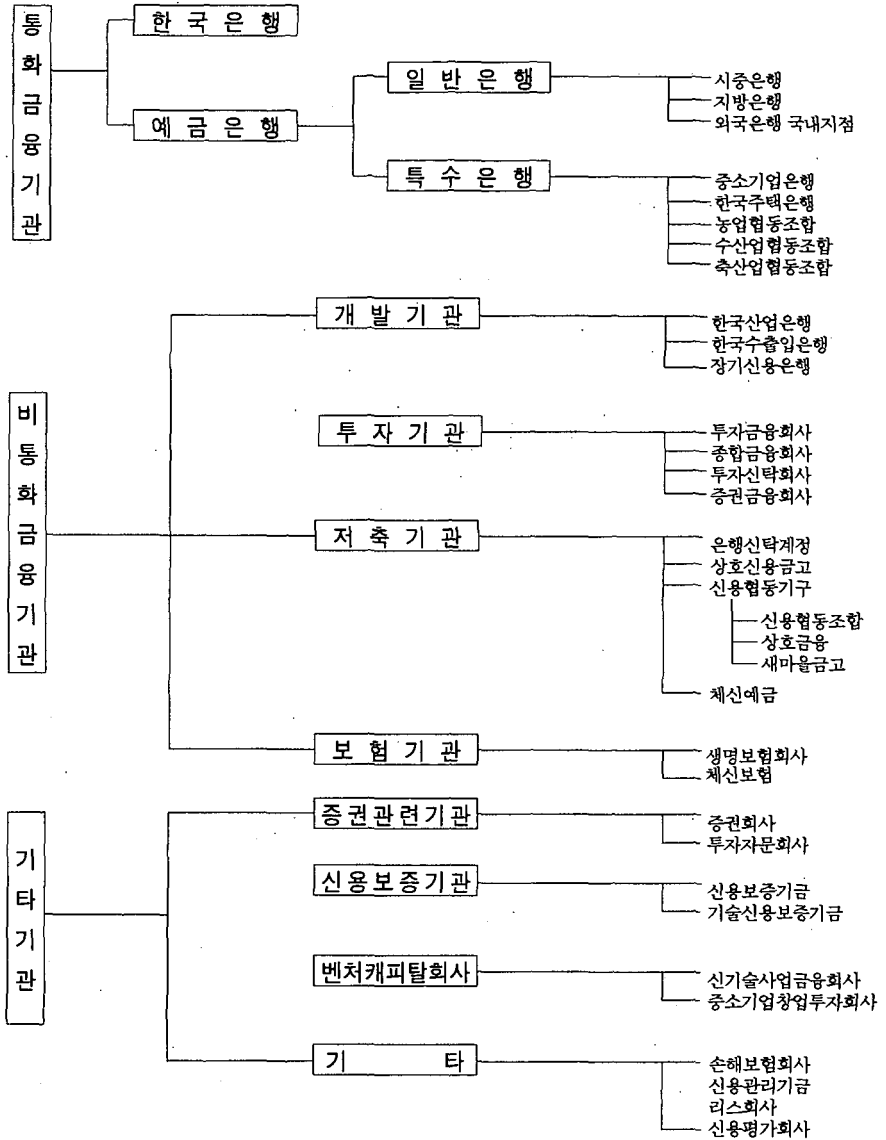
1. 여신전문 금융산업의 정의와 성장배경

비은행금융기관 중 수신기능 없이 예금 이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대출 및 보증 등 여신기능만 수행하는 금융업을 여신전문 금융산업(non-bank bank business)이라고 한다. 여신전문 금융기관은 수신업무 없이 자기자본 및 차입금만으로 각종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리스사, 카드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창업투자회사 포함), 팩토링사 등을 포함한다. 여신전문 금융산업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은행·증권·보험 등 전통적인 3대 금융권역 이외에 제4의 금융산업으로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시장의 발달과 증권화의 진전으로 여신업무와 수신업무의 분리가 가능해졌다. 즉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 1>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여신전문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금융자유화 및 증권화가 진전됨에 따라 은행·증권·보험 등 기존의 금융기관이 공급하기 어렵거나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틈새시장을 개발하여 여신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자금의 조달과 운용이 효율적으로 분리되어 수신규모에 관계없이 차입을 통해 충분한 여신을 공급하고, 반대로 여신규모에 관계없이 수신을 받아 적정한 수익률로 자금을 운용하는 형태의 금융업무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둘째, 금융자유화 이후 경쟁이 심화되면서 금융제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자기자본 비율규제 등 건전감독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예금은행 등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수신기능을 가진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하는 결과를 가져온 반면 여신전문 금융산업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또한 금리자유화에 따른 예대마진의 축소로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수신업무의 이점이 감소한 것도 여신전문 금융산업의 성장에 일조하였다.

셋째, 기존의 금융기관인 은행·증권·보험의 특성상 공급하기 어렵거나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틈새시장을 개발하여 공략하는 금융서비스 부문이 충분한 수익을 향유할 수 있었고 추가적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여신전문 금융기관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즉 여신전문 금융기관이 기존의 은행·증권·보험에 비해 여신업무의 취급면에서 유리한 점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2. 여신전문 금융산업의 특성

여신전문 금융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 자금조달상의 특성

여신전문 금융기관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지 않고, 은행차입, CP발행, 회사채발행 등 상환기일이 확정된 부채의 발행을 통해 특정의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이에 따라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자금조달이 용이한 반면에 자금조달비용이 높다.

나. 규제상의 특성

여신전문 금융기관은 예금자 보호문제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별도의 근거법에 의한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으며,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고 소유구조 및 업무방법에 대한 공적규제도 미약하다. 다만 일반상품과 동일한 차원의 이용과 보호측면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정부에 의한 규제는 미약한 대신에 채권자인 기관투자가 등에 의한 평가 및 감독 등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받는다.

다. 수요자의 특성

여신전문 금융기관은 은행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어려운 차입자를 상대로 자금을 공급하는 고수익·고위험 금융시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상품구매에 따른 소비자금융의 수요자는 일반대중으로 천차만별의 신용조건을 가지고 있어 금융중개기관이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우므로 여신전문 금융기관이 담당하며, 신설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 경우도 역시 금융중개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처리 능력으로 여신전문 금융기관이 수행한다.

라. 업무범위의 특성

여신전문 금융산업은 금융제도의 체계적 기반에 기초하여 발전한 것이 아니라 금융서비스 수요의 다양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개발되어 온 산업으로 은행·증권·보험업에 속하지 않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여신전문 금융산업은 본질적으로 특정한 금융서비스 시장이나 특정 고객층 또는 특정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틈새시장 금융서비스 공급자로 구성되는 산업이다.

II. 우리나라 여신전문 금융산업의 현황

1. 여신전문 금융산업의 도입배경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금융은 공급선도적 기능을 강조하여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규제하고, 정책금융, 선별금융 등의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자금의 정책적 배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은행의 인사 및 내부경영에도 깊숙이 개입하는 등 금융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처럼 금융

여신전문 금융기관은 예금자 보호문제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별도의 근거법에 의한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으며,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고 소유구조 및 업무방법에 대한 공적규제도 미약하다.

의 공정성이 부각된 반면 기업성은 등한시되어 금융부문이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함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과도한 금융규제로 인해 금융부문의 생산성 저하, 실물투기의 만연, 사금융시장의 번성, 자금배분의 왜곡 등 각종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여신전문 금융기관을 비롯한 대다수 비은행기관은 제도금융의 정책적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던 사금융의 양성화, 선별금융이 강조됨에 따른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수혜, 자본시장 육성을 통한 증시 저변확대와 증권 수요기반 구축, 물가안정을 위한 M₂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산업자금 공급통로의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여신전문 금융산업 설립추이는 대체적으로 경제발달 과정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경제개발의 시기였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시설설비자금의 동원과 관련된 금융기관인 리스, 벤처캐피탈산업이 도입되었으며, 경제성장의 결과 소비자금융이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한 최근에는 신용카드, 할부금융회사 등이 설립되었다.

리스산업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1976)의 시작연도인 1972년에 도입되었다. 당시 민간설비자금이 부족하여 도입된 상당부문의 외자가 부동산투기와 운전자금으로 유용되는 폐단이 발생하여 외화설비자금의 누수현상을 막고 효율적으로 설비투자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지원하는 물적금융인 리스는 필요한 외자와 선진기술의 도입 그리고 자금유용의 방지 및 국내 기계공업의 육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리스산업의 도입배경과 유사한 맥락에서 1980년을 전후하여 종합금융회사와 투자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팩토링업무가 허용되었다. 팩토링업무를 도입할 당시의 취지는 미결제 대금의 현금화를 통해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사채의존도를 경감시키며 성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벤처캐피탈산업으로 구분되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창업투자회사는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1986~1991) 기간중 정책기조를 성장주도형 경제정책에서 안정성장 위주로 전환하

면서 설립되었다. 이와 함께 균형성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특히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국제적으로 1980년대의 석유파동이 계기가 된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가 우리나라 고유의 자생적 기술개발 필요성을 절감케 한 여건 변화도 벤처캐피탈산업 도입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1987년 「신용카드업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된 신용카드는 소비자금융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소비자금융을 공급하고 거래를 투명화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현재 고속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수준의 지속적인 증가, 금융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 등의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소비자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에 대비하여 1996년부터 할부금융업이 도입되었다. 그간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일반화되고 있는 자동차 등 고가의 내구소비재 구매를 위한 할부금융 수요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외상매출이 많은 제조업체의 제품 판매와 관련한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제조업체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1997년 1월 1일부터 신용판매금융업 분야의 대외개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 할부금융업의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도 본 제도의 도입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2. 여신전문 금융산업의 현황

가. 산업의 규모

우리나라 여신전문 금융산업은 총 146개¹⁾(리스사 25개, 카드사 36개, 할부금융사 31개, 신기술금융사 4개, 창업투자회사 50개)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은행(25개), 보험(44개), 증권(32개) 등 여타 금융기관의 2~5배 규모에 해당된다. 그러나 자산은 전금융기관의 6%만을 점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영세하다.

〈표 1〉 금융권별 자산규모 (1996. 6 기준)

(단위 : 조원, %)

	예금은행	보험	증권·투신	종금	지역금융	여신금융 ¹⁾	계
규모	417	86	37	75	141	50	806
(비중)	(51.7)	(10.7)	(4.6)	(9.3)	(17.5)	(6.2)	(100.0)

주 : 1) 리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자료 : 재정경제원.

1) 팩토링사는 상법상의 회사로 최소자본금 5천만원을 충족하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현재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팩토링 또는 파이낸스회사로 등록된 회사는 19개로 추정되지만 사채업자를 비롯한 개인 소유의 팩토링사를 포함하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여신전문 금융기관의 현황

	리스사	카드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창업투자회사	팩토링사
기관 수	25개사	36개사	31개사	4개사	50개사	-
근거법	○시설대여업법	○신용카드업법	○신용카드업법	○한국종합기술금융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상법
관련법	○외자도입법 ○외국환관리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할부거래에 대한 법률 ○이자제한법			
최소자본금	100억원	200억원	200억원	50억원	100억원	5천만원
주요업무	○3차 서비스업 및 레저스 포츠업 등은 리스대상금지업종 ○시설대여 ○연불판매 ○시설대여나 연불판매에 관계되는 보증 ○팩토링	○신용카드법 ○할부금융업 ○팩토링 ○업무관련 신용조사 ○직불카드발행 ○선불카드발행	○할부금융 ○팩토링	○투자, 용자 ○리스 ○팩토링 ○신기술금융사 중 한 국종합기술금융회사만이 조건부 용자 업무를 취급	○창업자에 대한 투자의 종류: 주식인수, 전 환사채 신주인 수권부 사채, 약정투자 등 ○투자기업에 대한 단기대출 ○경영컨설팅	○채권의 매입·관리·회수업무· ○팩토링 대출 ○기타용역의 제공

나. 규제

여신전문 금융기관은 업종별로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규제되고 있다. 다만 할부금융 및 팩토링의 경우는 별도의 근거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신용카드업법 등의 일부조항에 의거하는 등

〈표 3〉 여신전문 금융기관 자금조달 관련 주요 규제

	리스사	카드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창업투자회사	팩토링사
채무부담 한도	자기자본 25배	자기자본 20배	자기자본 10배	-	-	-
금융기관 차입한도	자기자본 20배	채무부담한도 내에서 가능	-	-	-	-
회사채 발행한도	자기자본 10배	자기자본 10배	자기자본 10배	자기자본 5배 (한국종합기술의 경우 20배)	자기자본 5배	자기자본 4배

〈표 4〉 여신전문 금융기관 자금운용관련 주요 규제

	리스사	카드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창업투자회사	팩토링사
유가증권 보유	자기자본 20%	자기자본 50%	자기자본 50%	-	미투자 자기자본 20%	-
동일인한도	자기자본 100%	자기자본 25%	○법인 25% ○집단 100%	-	자본금 50%	-
출자한도	자기자본 30%	자기자본 50%	자기자본 5%	대상기업 ¹⁾ 50%	대상기업 ¹⁾ 50%	-
부동산	자기자본 50%	자기자본 100%	자기자본 50%	-	자기자본 20%	-
중소기업 지원비율	자기자본 50%	-	-	전액	전액	-

주 : 1) 대상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내

우리나라 여신전문 금융산업은 리스사·카드사·할부금융사·신기술금융사·창업투자회사 등 총 146개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은행·증권·보험 등 여타 금융산업과 경쟁적인 반면 자산규모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편이다.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진입규제를 받아 왔고 1995년 할부금융회사와 팩토링회사 설립 허용을 계기로 진입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개별법에 따라 업무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허용된 업무도 개별적인 승인사항이 많아 사실상의 업무범위는 법의 허용범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²⁾. 동일 업종에서도 회사에 따라 허용되는 업무범위가 달라 공정경쟁과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³⁾.

소유구조는 업종별로 현저하게 다르다. 리스사의 경우 전업사 25개 중 24개사가 은행의 자회사로 기업의 진출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할부금융회사 중 8개사는 리스와 신용카드회사의 출자회사이고, 신기술금융회사는 4개사가 각기 다른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신용카드·할부금융·팩토링·창업투자회사에는 기업의 출자가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소유구조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은행지배 방지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사실상 우회적인 대출의 성격을 가지는 리스의 경우는 기업의 소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⁴⁾.

3. 여신전문 금융산업의 위상 및 문제점

현재의 금융제도상 여신전문 금융기관은 금융산업의 독립된 영역에 대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즉 리스와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여신전문 금융기관들은 공식적인 금융기관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여신전문 금융업은 은행산업과 비통화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금융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개별적·제한적인 금융서비스 공급기능을 담당해 왔을 뿐이다. 은행산업과 비은행금융기관 및 증권산업에 걸친 금융제도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성격상 규제를 적게 받아야 할 여신전문 금융산업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규제를 엄격하게 받는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신전문 금융산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금융서비스를 취급하는 금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근거

2) 예를 들어 리스사의 경우 「시설대여법」 제7조에 의하여 시설대여, 연불판매,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에 관련된 보증, 위의 업무에 부수된 업무로 제한되어 있으나, 시설대여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개별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 허용되지 않고 있다.

3) 예를 들어 리스전업사는 외국환업무 취급이 금지되어 있는 반면에, 리스겸업사인 종금사는 외국환업무가 허용된다.

4) 그러나 리스업무가 사실상의 주된 업무인 종금사 중 8개사는 민간기업의 지배하에 있다.

법에 의해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 영위해야 하는 칸막이식 업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여 창의적으로 발전하기 어렵고 소비자의 금융편의를 증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둘째, 할부금융과 창업투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진입이 규제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보호에 안전하여 진취적인 금융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본질적으로 수요주도적인 금융서비스로, 공적규제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영역 등이 세밀하게 규제되고 있다. 업무영역이 대부분 단종업무로 제한되고 있고 허용된 업무도 개별적인 승인사항이 많아 사실상의 업무범위는 법의 허용범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동일한 업종에서도 회사에 따라 허용되는 업무범위가 다른 경우도 있다. 여신전문 금융산업의 업무범위는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표 5> 여신전문 금융산업의 업종별 업무범위

	리스	팩토링	일반용자	투자	할부금융	기타
리 스 사	○					
신용카드사					○	소액대출
신기술금융사	○	○	○	○		
창업투자사				○		
할부금융사		○			○	
팩 토 링 사		○				

III. 여신전문 금융업법(안)의 내용

1. 여신전문 금융업법(안)의 기본방향

여신전문 금융업은 수신기능이 없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등록제」로 전환하며, 다만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은 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허가제」를 유지한다.

또한 칸막이식 업종체계를 폐지하여 겸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업규제도 대폭 완화함으로써

여신전문 금융업은 수신기능이 없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등록제」로 전환하며, 다만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은 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허가제」를 유지한다.

회사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즉 영위업종은 회사가 금융수요와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고(점업방식), 일반대출, 어음할인 등 모든 여신업무를 부대업무로 허용한다. 규제에 관해서도 자기계열한도, 부동산보유한도, 중소기업 지원의무(리스)만 존치하고 기타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negative system). 다만 신용카드업에 대해서는 신용질서 유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존치한다.

한편 창업 및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현행의 각종 지원제도는 존치한다.

2. 여신전문 금융업법(안)의 주요내용

가. 여신전문 금융업 진입방식

신용카드업은 허가제를 유지하고, 리스·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은 등록제로 전환한다. 자본금 요건은 1~2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200억원, 3~4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400억원으로 한다⁵⁾. 출자자(대주주)의 요건을 명시하고⁶⁾, 대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진입제한을 두지 않는다⁷⁾.

진입절차를 보면 신청서와 출자자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정관, 업무방법서 등 제출 승인 절차는 없앤다.

나. 회사의 구성 및 업무

업종별로 등록(또는 허가)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1개 회사가 희망에 따라 1~4개 업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여신업무만을 전업으로 하는 여신전문 금융회사와 그렇지 않은 경영여신업자로 구분하여 등록(또는 허가)하도록 하며, 여신전문 금융회사는 일반대출, 어음할인, 소비자 리스 등 여신관련 부대업무를 포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5) 현재 타금융권의 자본금 요건을 보면 일반은행 1천억원, 지방은행 250억원, 종금사 300억원, 보험 300억원 등이다.
6)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완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융불량거래자, 법정 관리 기업의 대주주 등은 등록(또는 허가)을 불허한다.
7) 경제력 집중 및 편중여신 문제는 자기계열한도로 대처하고, 다만 동일기업집단에 속하는 여신전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동일한 여신전문금융업을 1개만 등록(또는 허가)하도록 한다.

다. 규제 및 지원내용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최소화한다. 영업방식에 관해서는 업무 운용준칙, 업무방법서 등에 의한 포괄적인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사항만을 법령으로 규제한다⁸⁾. 동일인한도, 유가증권보유한도, 채무부담한도, 지방기업 지원의무, 점포규제 등 자기계열한도와 부동산보유한도를 제외한 여타 규제는 폐지하고, 정관변경 승인제도도 폐지한다. 다만 자금조달 방법은 수신금지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금융기관 차입, 회사채 CP발행, 보유유가증권 매출 등으로 한정한다⁹⁾. 지원제도는 금융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즉 여신전문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발행한도의 특례를 인정하여 자기자본의 10배까지 가능하도록 한다¹⁰⁾. 리스·신기술에 대한 세제지원근거, 리스에 대한 관세법, 대외무역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각종 법규정의 적용 배제규정 등은 존치한다.

라. 기존회사의 전환

기존회사에 대해서는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새로운 법에 의해 등록(또는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존업무 이외의 여타 등록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을 허용한다. 신규진입은 새로운 법의 시행일(1998년 1월 계획)부터 허용한다.

마. 감독제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위반시 신용카드업은 영업정지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등록업의 경우 경미한 사항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한다.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부실화에 대한 시장의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한다.

또한 회사의 신청에 대한 합병 전환시 금융산업구조 개선법에 의한 세제상 지원 등을 부여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IV. 여신전문 금융제도 도입의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여신전문 금융제도의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여신전문 금융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은행·증권·보험이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여신전문 금융기관은 여러 형태의 여신을 신속적으로 공급

8)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질서유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규제하고, 리스의 경우 세제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지원 의무만을 부과한다.

9) 단 유가증권발행, 매출은 그 방법에 따라 수신형태가 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그 방법 또는 대상을 제한한다.

10) 상법상 채권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4배까지이다.

〈표 6〉 여신전문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

진입방식	-카드 : 인가(별도회사 설립방식) -리스 : 인가(별도회사 설립방식) -할부 : 인가(별도회사 설립방식) -신기술금융 : 인가(별도회사 설립방식)	-신용카드 : 허가 -기타 : 등록(겸업 방식, 칸막이 제거)
최소자본금	-카드 : 200억원 -리스 : 100억원 -할부 : 200억원 -신기술금융 : 50억원	-1~2개 업종 영위시 : 200억원 -3~4개 업종 영위시 : 400억원
정관, 업무방법서 변경	-카드 : 재정경제원 장관 승인사항 -리스 : 재정경제원 장관 승인사항 -할부 : 재정경제원 장관 승인사항 -신기술금융 : 제한없음	-폐지(포괄적 규제 폐지)
지점설치	-카드 : 재정경제원 장관 승인사항 -리스 : 재정경제원 장관 승인사항 -할부 : 재정경제원 장관 승인사항 -신기술금융 : 제한없음	-폐지
동일인한도 ¹⁾	-카드 : 법인 25%, 개인 2% -리스 : 법인 100%, 자기계열 100% -할부 : 법인 25%, 개인 2%, 기업집단 100% -신기술금융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용자만 가능	-폐지 -자기계열한도(100%)만 존치
채무부담한도 ¹⁾	-카드 : 20배 -리스 : 25배 -할부 : 10배 -신기술금융 : 제한없음	-폐지
유가증권매입 ¹⁾	-카드 : 50% -리스 : 20% -할부 : 50% -신기술금융 : 제한없음	-폐지
출자한도 ¹⁾	-카드 : 50% -리스 : 50%(해외법인 25%) -할부 : 10%, 계열회사 5% -신기술금융 : 동일 신기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폐지 -신기술금융의 출자한도는 존치
부동산소유한도 ¹⁾	-카드 : 100% -리스 : 50% -할부 : 50% -신기술금융 : 제한없음	-완화(100%)
중소기업지원	-카드 : 없음 -리스 : 취급액의 50% -할부 : 기계할부사 취급액의 50% -신기술금융 : 총자산 1천억원, 종업원 1천인 이하 기업만 대상	-완화(리스, 신기술의 경우 현행 유지)
지방기업지원	-카드 : 없음 -리스 : 지방사 취급액의 50% -할부 : 없음 -신기술금융 : 없음	-폐지

주 : 1) 자기자본 대비 비율임.

하여 고객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고,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여러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금융편의가 증대되게 된 것이다.

둘째, 여신전문 금융기관은 리스·할부금융·카드 등 상호 유사성이 높은 여러 업무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어 신규업무 확대에 따른 추가비용이 절감되는 범위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여신전문 금융기관은 업무다각화를 통해 경기변동 및 금융수요 변화 등 영업여건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여신전문 금융업의 업무영역이 통합됨으로써 동일 계열사 소속 기존의 여신전문 금융기관간 합병이 촉진되어 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여신전문 금융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심사기법의 고도화 등이 필수적인데 금융기관간 합병 및 이에 따른 대형화로 대규모 전산투자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은 남는다. 우선은 여신전문 금융업에의 진입이 파격적으로 수월해짐에 따라 효율적인 금융감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100개가 넘는 기관이 존재하며 200억원이면 금융기관의 설립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많은 여신전문 금융기관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를 최소화하여 감독할 사항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출자를 가장하여 예금을 수취하거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CP를 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수신행위와 같은 불건전한 금융행위를 제어할 효과적인 감독 업무를 수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채권발행과 관련된 특혜에 따른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및 무보증채의 투자자 보호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채권발행과 관련된 특혜는 ① 채권발행 한도상의 특혜와 ② 채권발행 절차상의 특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법상 일반회사의 채권발행 한도는 자기자본의 4배로 제한되어 있으나 여신전문 금융기관의 경우 자기자본의 10배까지 발행 가능하다. 일반 회사채(무보증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절차에 따라 신용도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여신전문 금융기관의 경우 이러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결국 이번에 도입된 여신전문 금융제도는 은행·증권·보험 등 기존의 금융권과 차별화된 업무영역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진입에 관한 규제가 파격적이라 할 만큼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의 우리나라 금융현실을 감안하면 일종의 실험이라고까지 할 만하다. **KDI**



정책토론포트

●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 이 원고는 1997년 7월 16일 한국조세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를 주제로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의 요약입니다.

- 편집자 주 -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 주 제 :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 일 시 : 1997. 7. 16(수) 14:00 ~ 16:30
- 장 소 : 한국조세연구원 2층 대회의실
- 일 정
 - 14:00 ~ 14:10 개회인사 : 최 광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14:10 ~ 14:30 주제발표 :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 14:30 ~ 16:15 토 론
 - 16:15 ~ 16:3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사회자 : 광태원 서강대학교 교수
- 발표자 : 임주영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토론자 : 박시룡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손광락 영남대학교 교수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엄기웅 대한상공회의소 이사
윤건영 연세대학교 교수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
이인실 하나경제연구소 금융조사부 팀장

주제발표

임 주 영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I. 서론 : 문제의 제기

경제규모가 대형화되고 경제·사회구조가 한층 다기화·고도화되었으며 OECD 가입 등 선진대열에의 진입이 가시화된 현시점에서 세제와 세정의 기본골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통합과 정보화 등은 우리의 경제·사회환경에 일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세제와 세정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II. 최근 외국의 동향

지난 10여년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주요 선진국의 조세정책 변화는 세제의 간소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의 인하 및 과세표준의 확대, 부가가치세의 확산 및 세율인상, 조세감면의 축소와 개편이라는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뉴질랜드·아일랜드·영국 등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추진한 세제개혁에서 조세체계의 단순화를 추구하고 있다.

둘째, 소득세제의 개편을 통하여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여 고용을 확대하고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이 진행

최근 주요 선진국의 조세정책 변화는 세제의 간소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의 확대, 부가가치세의 확산 및 세율인상, 조세감면의 축소와 개편으로 요약될 수 있다.

되고 있다.

셋째, 부가가치세제도의 확산이 매우 두드러지며, 일부 국가들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일반소비세의 비중 증대 현상이 뚜렷하다.

넷째, 호주·핀란드·미국 등에서는 산업 등 특정부문을 위한 조세유인제도 및 감면제도를 축소하고 인력개발, 기술개발 등 기능별 조세지원제도로 전환하고 있다.

III. 우리의 상황점검과 문제인식

1. 현행 세제와 세정의 문제

현행 세제의 문제는 크게 제도의 복잡성, 세부담의 형평성 미흡, 세제와 세정의 부조화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국세 17개, 지방세 15개로 총 32개(부가세 제외) 세목에 이르는 현재의 복잡한 세제는 다양한 형태의 loophole를 발생시켜 세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증대시켜 각종 비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행 세제는 고도성장시대의 자본축적을 위한 세제로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

세계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어 일정 수준의 성장이 이루어진 현시점에서는 세부담의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부 또는 영수증에 의한 근거과세 및 신고 납부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과세의 기반이 되는 조사업무 및 세원관리 업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세정에 권위 주의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2. 조세환경의 변화와 대응방향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그리고 경제의 성숙화로 표현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세정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국제화에 따른 자본이동의 자유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국내투자 유치를 포함하여 기술축적을 유인하는 세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또한 정보화의 진전에 의한 새로운 거래형태의 등장은 새로운 개념의 세제를 요구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함께 지방분권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및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경제의 성숙화로 복지·환경·부정부패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한 세제와 엄정한 세정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IV. 세계개혁과 세정의 합리화방안

1. 개편의 기본방향

세계개혁 및 세정합리화의 기본방향은 조세체계의 정비, 세부담 형평성의 제고, 효율적인 세정의 확립, 효율적인 지방세제의 정립, 경제의 성숙화에 대비한 세제의 정비로 요약될 수 있다.

2. 조세체계의 전면적 재구축

세제의 단순화를 위해서는 조세범위의 정립, 유사세목의 통합, 실효성 없는 세목의 폐지, 목적세의 정비, 조세감면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먼저 특별소비세·주세·담배소비세·경주마권세 등의 소비세를 하나의 소비세로 통합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재산할 사업소세 등을 재산보유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등록 및 취득세,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각각 통합함과 동시에 전화세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미 논란이 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현단계에서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실효성이 없는 자산재평가세와 세수기여도가 낮은 균등할 주민세도 폐지하여야 한다.

농지세와 공정거래를 위한 벌금의 성격을 지닌 부당이득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 체계에 편입시키고, 목적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각각 본 세에 통합·운영하며, 교통세의 경우 전반적인 세율수준의 조정 후에 특별소비세 등과 마찬가지로 소비세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각종 비과세·공제·감면 등 조세지원제도를 전향적으로 축소·정비하여 세제의 단순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조세의 시장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3. 세부담 형평성의 제고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서는 소득유형간 그리고 소득계층간 수직적·수평적인 형평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우선 사업소득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및 과세특례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 거래자료를 세무자료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기장시스템의 본격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신용카드 수수를 유인하기 위해서 사업자만이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신용카드 이용액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세부담의 불공평과 납세자의 피동성을 유발하는 표준소득률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소득추계와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방식을 보다 과학화함과 동시에 무신고 및 과소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제도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이 확실히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개인소득세제를 과세대상에 대한

세제개혁 및 세정합리화의 기본방향은

조세체계의 정비, 세부담 형평성의 제고, 효율적인 세정의 확립, 효율적인 지방세제의 정립, 경제의 성숙화에 대비한 세제의 정비로 요약될 수 있다.

제한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적 과세주의로 전환한다. 종합과세 보완조치로 신설된 각종 비과세저축은 저소득층의 세부담 완화 효과나 저축증대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전향적인 폐지를 검토하고 현재 보유단계보다 거래단계의 세부담이 큰 재산세제를 보유과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4. 효율적인 세정의 확립

세정의 비효율성을 시급히 개선하여 공평과세의 확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선 세무서의 현 세목별 조직을 단계적으로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고 현행 세무직렬을 조사직과 징수직, 일반행정직으로 구분한 후 징수업무를 전담하는 징수과를 설치하며 대규모 체납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징수세무서를 대도시권역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원을 포함한 내무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부처간 전산망을 온라인화하여 과세자료를 연계함으로써 행정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에 지방세제와 세정을 담당하는 국(局) 단위의 전문부서를 설치하여 지방세정을 전문화·광역화·전산화

세제개혁과 세정의 압리화

해야 한다.

장부 및 영수증 등에 의한 근거과세의 확립을 위해 과학적 추계 과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추계과세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현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기본적인 조세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국세행정의 국세통합전산망(TIS)을 조기에 정착시켜 과세자료의 수집, 부과, 징수업무의 연계 및 내부통제에 활용하여야 한다. 1997년 7월의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교부를 계기로 하여 권위주의를 추방하고 세정의 민주화를 정착시켜야 하며 1998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조세법원의 신설을 계기로 국세심판소를 조세심판소로 확대 개편하여 지방세의 불복청구도 함께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효율적인 지방세제의 정립

지방화 시대에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재정 자립도의 제고일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현행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세원의 공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자주권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일부 세목에만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확충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

세를 공동세 재원으로 하여 그 세입의 일부를 징세지원칙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주민세 개인소득할 등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높이고 지방세의 재산관련세 중 취득 등록세와 같은 거래과세의 비중은 낮추며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와 같은 보유과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과세자주권 확충을 통하여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경제의 성숙화에 대비한 세제의 정비

모든 거래가 전산화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미래에는 소비세제가 매우 적합한 형태의 세제로 간주되고 있다. 소비세제로의 이행을 위해 우선 과표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전자기장제도의 도입,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간이과세제도의 축소 통합 등을 통한 부가가치세의 과표확대와 사업소득자의 과세소득 포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단, 과표확대가 급격한 세부담 증대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율인하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법인세제의 경우 단일 세율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효과를 축소하며,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히 없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도모하고 기업의 접대비에 대한 세제혜택(손금산입)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기반조성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입장정리가 요청되고 있다.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상의 모든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이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조세정책을 정비함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를 왜곡하거나 방해하는 조세제도는 지양되어야 하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제도는 간단하고 투명해야 한다.

토론요지

박시룡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그동안의 세제는 세수확보에 중점을 두었고, 또한 투자촉진과 저축증대, 중소기업보호, 낙후 부문 지원 등 그때 그때의 정책목적 또는 정치적 이유 등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세제개혁 방향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세금의 종류가 너무 많고, 개별 세제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므로 대폭 단순화해야 한다. 특히 전략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등의 명분으로 도입하였던 각종 비과세, 감면조치 등을 대폭 정리해야 한다. 둘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소득형태별 세율조정, 소득추정 및 과

모든 거래가 전산화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미래에는 소비세제가 매우 적합한 형태의 세제로 간주되고 있다. 소비세제로의 이행을 위해 우선 과표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표의 현실화, 철저한 세원확보 및 관리에 주력하고 재산세를 보유과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선진국 수준으로의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신영섭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현재 공공서비스의 질이 열악하여 과세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세부담률 제고 문제와 함께 공공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조직 개편과 이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선행되어야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국세전산망과 같은 세정의 기반구조를 정비하고 내무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산망과의 효과적인 연결을 도모하여 전산을 통한 세원포착에 주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령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개정하여 공무원의 재량 여지를 줄여 나가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합당할 것이다.

손광락 / 영남대학교 교수

앞으로 OECD 국가 수준에 맞도록 조세부담

세계개혁과 세정의 압리화

를 높여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노령화 등에 따른 저성장시대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여 가야 한다. 그동안 조세감면 범위가 확대되었고 국내 세율이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세계개혁은 증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부담 형평성 제고의 핵심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형평성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소득자의 과세포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보수집 등 사전적인 감시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중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 전산기장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세안내와 교육을 통해 세금을 내도록 하며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

지방재정의 문제로서 공동세의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이 곧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재정조정 기능의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

윤 건 영 /연세대학교 교수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보다 자치단체간 재정력의 수직적·수평적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법인소득세율을 단일화하는 것도 기업간 경쟁

세부담 형평성 제고의 핵심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형평성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소득자의 과세포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보수집 등 사전적인 감시에 주력해야 한다.

성을 높이는 데 순기능을 하는 누진세율 구조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완전한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법인세율이 반드시 단일세율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조세의 형평성 추구에 대한 부담이 감소한다고 생각되므로 사회보장제도와 조세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한 역할분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만 우 /고려대학교 교수

첫째, 외국인의 국내투자 유치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한 각종 조세감면 및 유예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 문제와 각종 조세감면제도의 축소라는 방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근로소득자의 복리후생급여에 대한 과세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볼 때 시기상조이며 봉급생활자가 느끼고 있는 조세불평등에 대한 피해의식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세원확대와 함께 세율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볼 때 더 이상의 세율인하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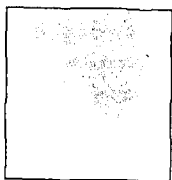
이 인 실 /하나경제연구소 금융조사부 팀장

앞으로 기술인력개발, 산업구조조정 조세지원 제도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령화사회의 도래는 생산수준을 낮추고 공공부문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소비와 저축을 통해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업 기 응 /대한상공회의소 이사

법인세의 경우 기업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단일화하고 또한 인하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업종전환을 위한 사업장 매각, 기업분할 등의 장애가 되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록세,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제의 보완을 위해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율을 2~3단계로 복수화할 필요가 있다.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부인 등 차입경영에 대한 중과세 방침은 지나친 시장개입이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정책흐름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2.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수정
3.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 등을 위한 금융개혁법률
입법예고
4. 1997년 상반기 세수실적(잠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세제실 조세정책과에서 8월 1일에 발표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 재정경제원에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벤처기업 창업촉진, 중소기업 재무구조 개선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의결(7월 30일)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

- 금융부채 상환을 위한 부동산 양도시 양도세 50% 감면대상 확대
 -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조감법상 중소기업
-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 : 자기자본의 5% 이상을 증자한 중소기업
 - * 소득공제율 : 증자액의 10%
- 초·중·고교 학생인 자녀 등의 국외교육비 한도액 : 1인당 150만원
-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 확대(60평방미터 이하 1주택 소유자 → 85평방미터 이하 1주택 소유자) 및 저축기간 단축(10년 → 7년)

○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1. 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1. 중소기업 세제지원 관련 사항

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한 부동산 양도시 양도세 감면대상 확대

법개정 내용	시행령 개정안
○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기업의 범위 및 감면을 확대	○ 양도세(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
- 감면대상 : 영세중소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조세법상 '중소기업'으로 확대
* 구체적인 대상기업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조정
- 감면율 : '30%' → '50%'	



○ 개정이유

- 감면대상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되, 조감법상 중소기업으로 일원화하여 지원이 불필요한 업종(음식·숙박, 오락·서비스, 부동산업 등)을 제외
- *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업종제한이 없음.
- 조감법상 중소기업 범위(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업종기준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 지식산업 등
 - 종업원수 기준 : 업종별 20명~1천명 이내
 - * 소기업 : 제조업 50인 이하, 건설업 30인 이하, 기타 10인 이하
 - 자산총액 기준 : 업종별 200억~800억 이내(제조업, 광업)
 - 소유·경영독립 요건 : 30대 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 제외

법개정 내용	시행령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자 전후에 자본을 감소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대상 증자금액 - 감자(減資)후 1년 이내에 증자시 감자 상당액을 차감 - 증자 후 감자시 최근의 증자금액을 먼저 감자한 것으로 보아 차감

○ 개정이유

-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되
- 일정수준 이상을 증자한 경우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창업중소기업 융자시 인지세 면제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등

나.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 및 소득공제율 등

법개정 내용	시행령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1997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까지 개인주주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하는 경우 증자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자 후 2년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증자소득공제 재시행 - 구체적인 적용대상법인 및 소득공제율은 시행령으로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자소득공제제도의 적용대상법인 및 소득공제율 - 대상법인 : 중소기업으로 자기자본의 5% 이상 증자한 법인 * 자기자본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 중 큰 금액 * 증자금액 : 연간 증자금액을 통산 - 소득공제율 : 증자금액의 10%

법개정 내용	시행령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2년 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 -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 신기술사업자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당연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4천만원 초과시에만 종합과세 -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허용 - 신기술사업금융회사(한국종합기술금융 등 4개)

○ 개정이유

- 가급적 창업중소기업이 융자를 받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허용
- 신기술사업자를 지원하는 벤처캐피탈인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활성화를 지원

○ 개정이유

- 도로공사 등 공공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제1종 사업자를 지원
- 제1종 시설 : 도로, 하천, 철도, 도시철도, 항만, 어항, 공항, 댐, 수도 등 13개
- 제2종 시설 : 가스공급, 집단에너지시설,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등 20개

2.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사업 지원 관련사항

법개정 내용	시행령 개정안
○ 민자유치사업 전담법인을 법인세 우대세율(16%, 25%)이 적용되는 공공법인에 추가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민간유치사업 전담법인 중 • 제1종 SOC 시설을 건설·운영하는 전담법인에 한정
- 민자유치사업 전담법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 만기 12년 이상의 사회간접자본 채권이자는 15% 세율로 원천분리과세 허용	
- 사회간접자본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민자유치사업자 또는 금융기관(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등)이 발행하는 채권 * 제1종 SOC 시설 재원으로 활용
○ 국가에 귀속되는 SOC 시설을 민자유치사업자가 무상사용·수익하는 기간중에 얻는 사용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제1종 SOC 시설
- SOC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3. 부실채권정리 및 합병지원 관련사항

법개정 내용	시행령 개정안
○ 성업공사가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5년내 양도시 양도세의 50%를 감면	- 성업공사가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다음 자산 •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인수함에 따라 취득한 자산 •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인수한 지구계획 대상자산
- 감면대상 재산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 농협간 합병시에도 일반 금융기관과 같이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신용사업 부분에서 사용하던 영업장 등
- 중복자산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 개정이유

- 성업공사를 통한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지원

-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산업 관련 증복자산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과 형평을 감안

4.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법개정 내용	시행령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주민세 및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근로자우대저축 신설 - 가입대상 : 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 근로자 - 저축요건 : 매월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3년 이상 적립하는 저축 • 저축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으로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우대저축의 구체적인 요건 - 저축한도 :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 1인 1통장(1계좌) - 저축기간 : 3~5년 - 저축가입 및 납입 : 근로자가 직접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저축금액을 납입 - 저축취급기관 : 은행, 농·수·축협 및 중앙회, 상호신용금고, 증권투자신탁회사, 체신관서, 신탁, 새마을금고 등

○ 개정이유

- 근로자의 저축을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

5. 소득공제 대상 국외교육비의 범위

법개정 내용	시행령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피한 국외교육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인정 - 다만, 국내 근무자가 자녀 등을 해외유학시키는 경우에는 유학 자격자에 한정 • 유학 자격자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 자격자의 범위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 자격자

법개정 내용	시행령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교육비의 경우에는 일정한 도를 등. • 한도액은 시행령으로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서 1년 이상 부양의무자와 동반체류하다가, 부모 등이 귀국한 후에도 계속 유학중인 특별유학생 ○ 국외교육비 공제한도액 - 본인 : 전액 - 자녀 등 • 초·중·고교생 : 1인당 연간 150만원 • 국내의 경우 전액 공제 • 유치원아 : 70만원 • 대학생 : 230만원 • 국내외 동일

○ 개정이유

- 불법유학이나 무자격자가 유학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배제

- 국내 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수준을 감안하여 한도 설정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 자격자

• 고등학교 재학 이하인 학생 : 국제규모대회 입상자, 기능사 이상의 자격자 등으로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유학 인정을 받고 외국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

• 고졸 이상인 학생 : 외국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

II. 기타 세제지원 확대내용

1.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 확대

법개정 내용	시행령 개정안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는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대상자 •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1주 택 소유자 - 의무저축기간 : 10년 이상	- 가입대상자 확대 •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1주 택 소유자로 확대 - 의무저축기간을 7년으로 단축

○ 개정이유

- 노동관계법 개정시 「근로자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의무 저축기간을 단축기로 한 것을 반영
- * 소득세법상 주택자금공제(불입금액의 40%) 대상자 확대 문제
- 현행 60평방미터 이하 1주택 소유자를 85평방미터 이하 1주택 소유자로 확대하여 연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하여 1997년분부터 적용할 예정임.

○ 적용시기

- 공포일 후 저축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하되, 기계약 체결분 중 저축기간이 7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도 적용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수정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정책과에서 7월 8일에 발표한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수정」의 내용입니다.

- 지난 6월 16일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 한국은행총재,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이 합동기자회견을 통하여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발표한 이후
- 당정협의(6월 19일), 원로회의(6월 30일)에서 제기된 의견과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 정부와 신한국당은 7월 10일 최종 당정협의를 거쳐 당초 정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I. 배경

- 지난 6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하여 그동안 당정협의, 원로회의에서 제기된 의견과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원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음.

II. 수정의 기본방향

- 수정안은 당초 발표된 정부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 하되
- 중앙은행의 위상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한국중앙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와 집행부를 포괄
 - 물가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임을 완화
 - 의안 제안권을 삭제하는 등 정부와의 연결장치를 축소
- 중앙은행의 원활한 통화정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 중앙은행의 기능에 통화신용정책과 직결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업무를 포함
 - 금융감독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였으며
 - 증권·선물시장 관리·감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를 설치

III. 수정안의 주요 내용

1. 중앙은행제도 관련

- 중앙은행의 위상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 중앙은행의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 정부와의 연결장치는 최소화
- 금융통화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인위적 분리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와 집행기구를 포괄하는 '한국중앙은행'을 설립
 - 현행 「한국은행법」을 「한국중앙은행법」으로 개정
- 사무국 설치에 따른 오해를 불식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사무국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음.
- 중앙은행의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 해임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선언적 책임으로 변경
- 금융통화위원회의 독자적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 재정경제원 장관의 의안 제안권을 삭제하고
 - 재정경제원 장관·금융통화위원회 의장·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간 정례회의 삭제
 - 금융통화위원회원 임기를 3년 연임에서 4년 연임으로 연장
- 중앙은행의 원활한 통화정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 중앙은행의 기능에 통화신용정책과 직결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업무를 포함

2. 금융감독기구 개편 관련

- 금융감독 행정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에 부위원장과 금융전문가를 추가
 - 증권·선물시장 관리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를 설치
-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 구성·임기 조정
 - 위원회 구성을 당초 위원장 포함 7인에서 2인을 추가하여 위원장 포함 9인으로 변경
 - 부위원장과 금융전문가 1인을 추가하되 상근위원으로 함.
 - 위원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상근위원인 회계·법률·경제전문가 3인은 비상근 위원으로 함.
 - 위원장 임기를 당초 5년 단임에서 3년 연임으로 변경
-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 동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하되
 - 위원장은 금융위원 중 금융전문가인 위원이 겸임
 - 위원은 상근위원 2인 및 비상근 위원 2인을 둠.

3. 재정경제원 기능 및 기구의 축소

-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을 3개국에서 2개국으로

축소하는 외에 감사관실의 금융기관 검사기능을 폐지하고 인력을 감축

<참고>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제도 개편(정부원안과 수정안 대비표)

○ 기본방향

- 정책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와 집행부로 구성되는 한국중앙은행을 설립하고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과

책의 독립·중립성 보장

- 금융감독 업무의 성격을 공기능으로 분명히 정립하고 금융감독 업무의 통합 단일기능에 의한 수행
-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재정경제원과 분리, 총리 산하 별도기구로 설치
- 금융 관련 3개 기관(재정경제원, 금융통화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간의 연계성 제고
- 상기방향에 따른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기타사항은 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수용

정부방안	수정안
<p>I. 중앙은행제도 관련</p> <p>1. 금융통화위원회를 중앙은행제도의 정책결정기구로, 특수법인인 한국은행을 그 집행기구로 함.</p> <p>2. 금융통화위원회 및 한국은행의 설치근거로 중앙은행법 제정</p> <p>3. 중앙은행의 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능으로서 통화신용 정책의 수립 - 협의기능으로서 환율, 외화여수신·외환포지션정책 <p>- 중앙은행의 통화신용 정책은 시장참여자로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중앙은행은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와 집행부로 구성함. <p>(수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중앙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와 집행기구를 포괄함으로써 금융통화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인위적 분리라는 의구심을 해소하되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기구로서의 성격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의 한국은행법을 한국중앙은행법으로 개정함(법명칭 포함). <p>(수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법 제정에 따른 청산절차 등 문제점 최소화(한국중앙은행은 현 한국은행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신용 정책의 수립 집행 - 통화신용 정책과 직결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 정부의 환율, 외화여수신, 외환포지션 정책에 대한 협의기능 <p>(수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석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명시 <p>-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간접관리방식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p>

정부방안	수정안
<p>5.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정부와 협의하여 매년 물가안정 목표 (inflation target)를 주내용으로 하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 발표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짐.</p> <p>- 이 목표를 특별한 이유 없이 지키지 못할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의장과 상근위원은 임기 전이라도 해임사유가 됨.</p> <p>6. 중앙은행의 지도검사</p> <p>- 통화신용 정책 수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 필요한 경우 감독기구에 대한 특정분야 검사 및 그 결과 승부 요청권, 필요시 공동검사 요청권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권</p> <p><신설></p> <p>7. 중앙은행의 집행부</p> <p>- 부총재 이하는 총재가 임명하는 순수한 집행기구</p> <p>8. 정관의 제·개정을 금융통화위원회 승인으로 함.</p>	<p><수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석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지구수정 <p>- 중앙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매년 물가안정 목표를 정하고 이를 발표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짐.</p> <p>- 삭제</p> <p><수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요인으로 인한 물가상승에 대한 선언적 책임의 성격을 분명히 함. <p>- 제3항의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권, 필요한 경우 감독기구에 대해 특정분야에 대한 검사 요구(필요시 공동검사 포함) 및 그 결과 승부 요청권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권</p> <p>- 감독기구는 중앙은행의 검사요구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p> <p><수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은행의 지도검사 기능 보강 <p>- 부총리 이하는 총재가 임명</p> <p>- 금융통화위원회는 집행부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필요시 시정요구 및 적절한 책임을 묻는 조치요구 가능</p> <p><수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부의 위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아울러 통화신용 정책 집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화 <p>- 정관의 제·개정을 금융통화위원회가 심의 결정함.</p> <p><수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중앙은행의 일부가 됨에 따른 수정

정부방안	수정안
<p>11. 금융통화위원회의 임기</p> <p>- 3년 연임</p> <p>II. 종합금융감독기구 관련</p> <p>8. 종합금융감독기구 관련</p> <p>- 위원장 5년 단임 - 위원 3년 연임</p> <p>9. 금융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인원</p> <p>- 위원장 이하 7인</p> <p>19-1. 증권선물위원회(신설)</p>	<p>- 4년 연임</p> <p>- 교차임명 근거 신설 <수정이유> • 임기연장 및 교차임명 필요성 반영</p> <p>- 위원장·위원 공히 3년 연임 <수정이유> • 통상의 합의제 정부기구의 임기원칙 중용(예 : 공정거래위원회)</p> <p>- 위원장 이하 9인 <수정이유> • 각 분야의 전문가 보강</p> <p>- 부위원장 신설 <수정이유> • 장관급 합의제 기관의 구성 예에 따름.</p> <p>- 금융전문가 1인 추가(상근위원 3인 : 위원장, 부위원장, 금융전문가) <수정이유> • 관계분야 전문가의 보충 필요성 • 기구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근위원 최소화</p> <p>- 위원장 이하 5인(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상근위원) - 상근위원 2인, 비상근위원 2인 - 위원은 위원장 추천, 대통령 임명 <수정이유> • 금융개혁위원회의 구체화</p>

정부방안	수정안
<p>Ⅲ. 3개 관련기관간의 연계성 제고</p>	
<p>24. 재정경제원 장관의 금융통화위원회 의안 제안권 보유</p>	<p>- 삭제 <수정이유> •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 강화</p>
<p>25. 재정경제원 차관 및 한국은행 부총재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 참여</p>	<p>- 재정경제원 차관 및 한국은행 부총재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 참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의 건전성 관련 감독규정을 포함한 주요 감독 관련 규정 제·개정시 안건이 사전 배포되므로 재정경제원·한국은행과의 실무협약이 가능하고 감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수렴 가능) <수정이유> • 주요 감독규정 제·개정시 금융감독위원회 심의를 통한 의견수렴</p>
<p>26. 재정경제원 장관·금융통화위원회 의장·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월 1회 정례 협의</p>	<p>- 삭제 <수정이유> • 관행으로 정착 기대</p>
<p>Ⅳ. 행정사항</p>	
<p>30. 금융통화위원회에 사무국 설치</p>	<p>- 사무국 설치 규정 삭제 <수정이유> • 사무국 설치를 명시함에 따르는 오해를 불식</p> <p>- 금융통화위원회의 상근위원을 위한 보좌 인력 배치 <수정이유> • 단, 위원들의 상근화에 따른 보좌인력 배치 필요성 명시</p>
<p>32. 재정경제원 기능 및 기구 축소</p>	<p>-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을 2개의 금융국(국내·국제)으로 축소 개편하고 - 감사관실의 금융감독관련 기능 폐지 및 인원 감축 <수정이유> • 감독기구 일원화에 따른 관련 조치</p>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 등을 위한 금융개혁법을 입법예고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정책과에서 7월 25일에 발표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 등을 위한 금융개혁법을 입법예고」의 내용입니다.

- 재정경제원은 1997년 7월 24일(목요일)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등 우리 금융의 핵심적인 과제에 대한 개혁추진을 위하여 금융개혁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의뢰하였음.
-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법예고될 법률은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 구체적으로는 제정법률안 1건(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설치법 제정법률안)
 - 개정법률안 11건(한국은행법 개정법률안, 은행법 개정법률안,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등)
 - 3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정비법 제정법률안 1건(한국은행법 개정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설치에 관한 법 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임.

1. 한국중앙은행법 개정안

- 한국은행을 한국중앙은행으로 개편하고, 현행 한국은행법을 한국중앙은행법으로 개정
- 중앙은행은 매년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포함한 통화신용정책 운용계획을 정하여 발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 정책결정기구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통화위원회를 둠.
- 재정경제원 장관의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겸직 폐지, 의안제안권 및 회의소집권 폐지 등으로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정부 관여를 축소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제고
- 중앙은행에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하는 집행부를 두고,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집행부를 통할하는 중앙은행 총재를 겸임

- 중앙은행은 통화신용 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가능
- 금융감독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의 국무회의 출석 발언, 재정경제원 차관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열석 발언, 재정경제원 장관의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을 통하여 통화신용 정책과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도모
- 중앙은행의 경비성 예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 장관이 승인

2.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설치법 제정안

-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을 설치
- 은행·증권·보험 및 기타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업무 담당
- 금융감독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총리 제청·대통령 임명, 기타 위원은 대통령 임명
-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감독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금융감독원을 지시·감독함.

○ 증권·선물과 관련된 전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설치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업무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기능을 수행

-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

- 원장 1인, 부원장 4인, 부원장보 9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둠.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을 겸임하며, 부원장 및 부원장보는 원장 제청·금융감독위원회 임명, 감사는 금융감독위원회 제청·대통령 임명

-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이 법은 199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20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을 정부조직화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감독원의 정부조직화 및 직원의 공무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3. 은행법 개정안

○ 은행법상 금융통화위원회 및 은행감독원장 권한

- 을 재정경제원, 금융통화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배분·조정
- 은행업 인가 및 취소 관련 사항 → 재정경제원
- 금리 등 통화신용 정책 관련 사항 → 금융통화위원회
- 은행 건전경영 지도·감독 관련 인·허가 → 금융감독위원회
- 은행 검사·제재 → 금융감독원
- 비상임이사 구성비율 조정으로 주주대표의 경영 참여 강화
- 대주주대표(지분율순) 50%, 소액주주 대표 30%, 이사회 추천 20% → 주주대표(지분율순) 70%, 이사회 추천 30%
- 대통령이 정하는 계열기업군 및 동 계열주,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
- 상법상 이사회 권한으로 되어 있는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지점설치·이전 등에 대한 인가제를 폐지하되, 금융감독위원회가 일정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은행의 주식투자에 대한 한도설정 근거 마련

4. 증권거래법 개정안

-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부여
- 재정경제원 장관의 권한 중 다음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양
 - 증권회사 및 투자자문회사의 외국에서의 영업허가, 증권거래소·증권협회·증권예탁원의 타업무 겸영인가, 과태료 부과권 등
- 증권시장과 관련된 업무처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다음 권한을 부여
 -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선물관련 규정 및 조치에 대한 심의 등
- 증권사의 부채비율에 대한 제한, 유가증권시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한 포괄명령권의 폐지 등으로 증권업무의 자율성을 제고
-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발행시장 관련 기본사항, 공개매수신고 관련 기본사항 등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

5. 보험업법 개정안

- 보험영업 관련 각종 인허가 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

- 보험감독원을 폐지하여 보험보증기금의 관리·운용업무는 예금보험공사로, 기타 권한과 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이관

6.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 예금보험공사·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으로 다기화되어 있는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
- 예금보험공사의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기능을 강화
 -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공동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부실 금융기관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정리전담 목적의 정리금융기관을 한시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예금자 등이 보험금 지급액 이외의 예금 등 채권에 대해서 조속히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예금채권 매입제도) 마련
- 재정경제원 장관 및 은행감독원장의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

7.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영업관련 인허가 업무 등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

- 종합금융회사의 건전자산 운용을 위하여 현재 업무운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계열 여신 및 계열기업군 여신한도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투명성을 제고

- 종합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금융관련 법률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임원의 자격요건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요구 조항 등 법적 근거 마련

- 「단기금융업법」상의 단기금융업 영업인가 규정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흡수하고, 「단기금융업법」을 폐지

8. 선물거래법 개정안

- 선물거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
- 영업 관련 인·허가 업무 등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
- 증권선물위원회에 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선물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기능 부여

9. 신탁업법 개정안

- 영업 관련 인·허가, 감독규정 제정 등의 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 검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수행

하도록 조정

- 현재 재정경제원 장관의 통첩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수탁 및 신탁재산 운용 등 관련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인가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기회를 부여하고 감독 당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명문화하여 금융기관 및 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신탁업자의 최소자본금을 경영은행의 법정 최저 자본금(지방은행 250억원) 수준으로 정하고 금전 신탁업을 영위하지 않는 신탁업자 경우 등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

10.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

- 신용금고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처리와 관련한 경영지도·경영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이관(신용관리기금을 금융감독원에 통합)
-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예금자 보호기능을 예금보험공사로, 지분준비금 및 예탁금 관리업무는 금고연합회로 이관
- 부실금고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금고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부실금고처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 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개정하여 상향조정 근거 마련
- 금고의 업무범위를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의 수입 업무, 소액신용대출 업무, 내국환 업무에서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업무, 내·외국 환업무로 조정
- 규제개혁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금지 등 금지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

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권한 이관
- 은행합병 인가 : 금융통화위원회 → 재정경제원 장관
- 부실 금융기관 판정 및 경영개선조치 명령·조기시정 조치의 기준 결정 등 : 재정경제원·금융통화위원회·증권관리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 조기 시정조치의 집행 : 재정경제원·금융통화위원회·증권관리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 부실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에 대한 자금지원 조항 등과 같이 타법률(예금자보호법)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

1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의무화
 - 대통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에 대해 소속 계열회사 별 재무제표를 결합한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계열회사는 동 재무제표를 비치·공시토록 의무화
 - 200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외부감사업무 조정
 - 감사인 지정, 관리 등의 업무는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 이관
 -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재정경제원 장관이 승인하던 감사기준, 회계처리기준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

13. 폐지법률안

- 단기금융업법(일부 기능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흡수)
- 신용관리기금법(주요 기능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

14. 절차법 형식으로 개정할 법률(36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주택은행법 폐지법률, 여신

전문금융업법, 중소기업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장기신용은행법, 증권투자신탁업법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 신용보증기금법,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외국환관리법,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국민투자기금법, 공사채등록법, 담보부사채신탁법
- 수출입은행법, 농·수·축산·임업협동조합법(4), 새마을금고법, 지방세법, 조감법, 특경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1997년 상반기 세수실적(잠정)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세제실 조세정책과에서 8월 7일에 발표한

「1997년 상반기 세수실적(잠정)」의 내용입니다.

- 재정경제원이 잠정 집계한 1997년 상반기 국세징수실적임.
- 1997년 상반기까지의 국세잠정실적은 전년동기보다 5.8% 증가(납기연장분 감안시 8.7%)한 33조 6,341억원으로 금년목표 대비 45.5%의 진도(進度)를 시현함.
- 경기하강 국면의 지속과 지난해 기업채산성의 악화·실업문제 등에 따른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법인세의 실적 부진과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특별소비세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세수가 부진함.
- 하반기 이후의 경기가 현 추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1997년 국세수입은 1997년 국세예산(74조 3억원)에 3조 5천억원 내외 정도 부족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I. 1997년 상반기 세수 현황

- 1997년 6월까지의 국세수입은 총국세예산 74조 3억원의 45.5%인 33조 6,341억원으로 전년동기 실적(31조 7,925억원)보다 5.8% 증가한 규모임(1997 예산상 세입 증가율은 13.9%임).
 - 7월 이후로 납기가 연장된 법인세·교통세·주세·교육세 등을 감안하면 세수 증가율은 8.7%임.
- 이러한 실적은 증가율이나 진도비에 있어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임.
 - 부진 이유
 - 경기하강국면의 지속과 지난해 기업채산성의 악화, 실업문제 등으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법인세의 실적이 특히 부진함.
 - 경기부진에 따른 주요 과세대상 물품의 출하감소로 특별소비세 증가율의 감소 및 휘발유 소비증가를 둔화로 인한 교통세수의 상대적인 부진

1997년 상반기의 국세실적(잠정)

(단위 : 억원, %)

	1997 예산	1997 상반기		진도비		
		1996 대비 증감률	예산대비	납기연장분 감안시	3년실적 평균 ¹⁾	
총 국 세 (일반회계 국세)	740,003 (640,335)	336,341 (294,781)	5.8 (4.2)	45.5 (46.0)	46.7 (46.9)	48.9 (49.4)
내 국 세	547,116	253,254	3.0	46.3	47.2	49.6
교 통 세	61,494	23,046	3.3	37.5	42.2	45.5
관 세	59,723	29,328	13.4	49.1	49.1	48.3
교 육 세	58,396	25,328	74.9	43.4	45.4	45.0
농 특 세	13,230	5,493	-40.7	41.5	42.3	62.3

주: 1) 최근 5년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 진도비

II. 주요 세목 세수분석

하였음.

1 소득세

- 소득세 수입은 특히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의 부진으로 인하여 전년동기 대비 3.3% 감소하였음.
- 상반기 종합소득세의 세수는 경기부진의 지속·세율 인하 등으로 인하여 감소하였음.
- 근로소득세는 경기부진에 따른 임금인상 억제·실업률 증가 등으로 세수여건이 악화되어 감소하였음.
- 1996년 9월 이후부터 소수가족 등에 대한 추가공제효과가 반영되었으므로 1997년 하반기 이후부터의 근로소득세 감소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법인세

- 법인세는 신고분 법인세의 부진으로 9.3% 감소

- 1997년 상반기 신고분 법인세는 경기하강 국면의 지속, 주가하락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손실,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 확대 등으로 지난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감소하였음.

3. 부가가치세·관세

- 국내분 부가가치세는 수출·설비투자의 저조로 환급세액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전년보다 16.5% 증가함.
- 상반기 수출 증가율 : 0.7% (1996년 : 647억달러 → 1997년 : 651억달러)
- 1/4분기까지의 설비투자 증가율 : -1.6%(1996년 : 4.9%)

- 수입분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과세환율의 상승

(786.4원/달러 → 878.5원/달러)으로 각각 15.1%와 1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4. 특별소비세

○ 특별소비세는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하였으나, 이는 1996년 6월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전년 6월분 세수가 7월로 이연된 데 따른 결과이며 -이연된 세수를 감안하면 7.4% 감소(납기연장분 반영시 5.5% 감소)한 수준으로서, 경기부진으로 자동차·냉장고 등 주요 과세대상 물품의 출하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상반기 주요과세대상물품 출하 현황

(단위 : 만대, 만톤, %)

	1996	1997	증감률
자동차	55.0	50.8	-7.7
LPG	84.1	85.1	1.2
TV	109.2	105.7	-3.2
냉장고	89.5	84.1	-6.0

5. 주세

○ 주세 세수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맥주의 출고부진과 세율 인하(150% → 130%)로 전년동기 대비 31.7% 감소함(납기연장분 반영시 7.0% 감소).

(단위 : 만kl, %)

	1996	1997	증감률
맥주	86.3	85.0	-1.5
소주	39.3	43.4	10.4

6.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는 세율의 인하(0.3% → 0.15%, 1996년 4월 1일)로 전년동기 대비 24.8% 감소함.

7. 교통세

○ 교통세는 전년동기 대비 3.3%(납기연장분 반영시 16.5%) 증가하였으나, 이는 1996년 6월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전년 6월분 세수가 7월로 이연된 데 따른 결과이며 -이연된 세수를 반영하면 3.2%(납기연장분 반영시 9.1% 증가) 감소한 수준으로서
 •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의 차량보조비 축소 및 가계의 소비절약에 따른 휘발유 소비증가율의 둔화가 원인으로 분석됨.

과세대상 유류 소비현황

(단위 : 만kl, %)

	1996 상반기	1997 상반기	증가율
휘발유	509.7	515.2	1.1
경유	903.8	1,067.6	18.1

8. 교육세

○ 교육세는 1996년 7월부터 적용된 담배소비세분·마권세분에 대한 과세신설 및 경주마권세분에 대한 세율 인상으로 상반기까지는 전년동기 대비 74.9% 증가하였으나
 - 7월 이후에는 증가율이 감소되어 예산 증가율 수준

(41.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III. 1997년 국세전망

9.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는 1997년부터 법인소득분에 대한 농특세(법인소득 5억원 초과분의 2%: 약 4,580억원)가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동기 대비 40.7% 감소함.

○ 하반기 이후의 경기가 현 추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 1997년 국세수입은 1997년 국세예산(74조 3억원)에 3조 5천억원 내외 정도 부족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1997년 상반기의 국세실적(잠정)

(단위 : 억원, %)

	1997 예산	1997 상반기		진도비		
			1996 대비 증감률	예산대비	납기연장분 감안시 ¹⁾	3년실적 평균 ²⁾
총 국 세	740,003	336,341	5.8	45.5	46.7	48.9
일반 회 계	640,335	294,781	4.2	46.0	46.9	49.4
특별 회 계	99,668	41,560	18.7	41.7	45.5	45.4
내 국 세	547,116	253,254	3.0	46.3	47.2	49.6
(일반 회 계)	(519,075)	(242,515)	(3.3)	(46.7)	(47.2)	(49.6)
소 득 세	172,217	72,224	-3.3	41.9	42.0	49.1
법 인 세	99,707	42,151	-9.3	42.3	44.0	49.0
상 속 세	11,753	5,550	31.0	47.2	47.8	45.5
부가가치세	186,192	95,956	16.5	51.5	51.6	48.8
특별소비세	33,543	15,631	3.2	46.6	47.6	51.1
증권거래세	3,292	1,326	-24.8	40.3	40.3	49.3
주 세	20,544	6,917	-31.7	33.7	45.8	47.9
전 화 세	7,498	3,823	21.8	51.0	51.0	48.5
교 통 세	61,494	23,046	3.3	37.5	42.2	45.5
관 세	59,723	29,328	13.4	49.1	49.1	48.3
교 육 세	58,396	25,328	74.9	43.4	45.4	45.0
농 특 세	13,230	5,493	-40.7	41.5	42.3	62.3

주: 1) 7월 이후로 납부가 이연된 납기연장분(9,101억) 감안시 진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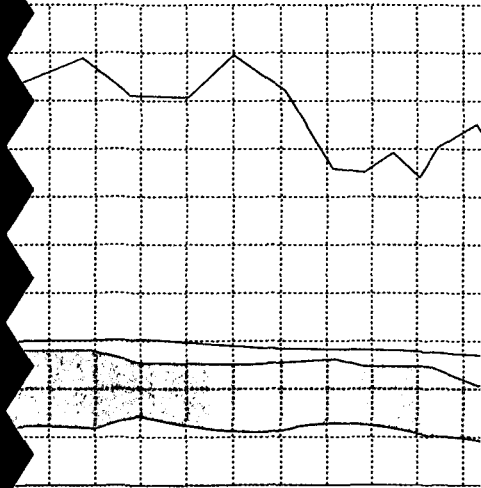
2) 최근 5년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 진도비



재정 통계

기타 간접세-관련 통계

1. 전화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2. 인지세 예산 및 징수
3. 증권거래세 예산 및 징수
4. 증권거래세 부과
5. 증권거래세 감사실적



1. 전화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단위: 명, 백만원, %)

	납세자수	예산액(A)	징수결정액(B)	부과액	수납액(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B/A)	(C/A)
1974	1	6,603	5,261	5,344	5,261	-	-	79.7	79.7
1975	1	10,663	9,764	9,950	9,764	-	-	91.6	91.6
1976	1	14,926	13,829	13,815	13,829	-	-	92.7	92.7
1977	1	18,648	20,328	20,328	20,328	-	-	109.0	109.0
1978	1	25,220	22,921	22,922	22,920	1	-	90.9	90.9
1979	1	35,002	30,973	30,972	30,972	-	-	88.5	88.5
1980	1	48,197	49,997	49,996	49,996	1	1	103.7	103.7
1981	1	73,055	66,741	66,739	66,739	1	1	91.4	91.4
1982	1	107,029	101,580	101,575	101,573	5	2	94.9	94.9
1983	1	114,580	123,796	123,777	123,775	17	4	108.0	108.0
1984	1	145,112	153,994	153,933	153,936	54	4	106.1	106.1
1985	1	173,869	166,647	166,548	166,551	85	11	95.8	95.8
1986	1	201,520	195,578	195,461	195,463	107	7	97.1	97.0
1987	1	213,814	235,843	-	235,737	104	2	110.3	110.3
1988	1	244,739	283,603	-	283,462	123	18	115.9	115.8
1989	1	235,281	237,601	-	237,437	154	10	101.0	100.9
1990	1	234,413	261,661	-	261,522	135	4	111.6	111.6
1991	3	340,572	311,510	-	311,387	93	30	91.5	91.4
1992	4	352,020	360,507	-	360,431	66	10	102.4	102.4
1993	4	414,267	399,824	-	399,722	83	19	96.5	96.5
1994	4	459,800	458,824	-	458,696	117	11	99.8	99.8
1995	4	467,400	543,177	-	543,051	121	5	116.2	116.2

주 : 납세자수는 징수의무자수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 인지세 예산 및 징수

(단위: 명, 백만원, %)

	예산액(A)	징수결정액(B)	부과액	수납액(C)	미수납액	비율	
						(B/A)	(C/A)
1965	746	738	11	738	-	98.9	98.9
1966	1,485	1,775	22	1,775	-	119.5	119.5
1967	1,672	2,312	19	2,312	-	138.3	138.3
1968	2,560	2,677	17	2,677	-	104.6	104.6
1969	2,962	14	13	14	-	0.5	0.5
1970	3,260	11	11	11	-	0.3	0.3
1971	3,909	2,400	9	2,400	-	61.4	61.4
1972	7,649	7,855	32	7,855	-	102.7	102.7
1973	6,090	8,294	58	8,293	1	136.2	136.2
1974	9,149	13,709	56	13,709	-	149.8	149.8
1975	12,920	12,772	54	12,772	-	98.9	98.9
1976	14,101	14,603	57	14,603	-	103.6	103.6
1977	16,599	19,328	98	19,328	-	116.4	116.4
1978	18,425	24,897	69	24,897	-	135.1	135.1
1979	41,736	37,319	784	37,317	2	89.4	89.4
1980	28,794	33,890	353	33,890	-	117.7	117.7
1981	30,378	49,679	577	49,678	1	163.5	163.5
1982	54,964	54,228	867	54,227	1	98.7	98.7
1983	59,086	64,212	1,127	64,212	-	108.7	108.7
1984	68,791	68,840	1,026	68,840	-	100.1	100.1
1985	77,312	75,670	917	75,670	-	97.9	97.9
1986	80,617	83,529	88,534	83,529	-	103.6	103.6
1987	89,801	99,772	-	99,772	-	111.1	111.1
1988	106,017	120,692	-	120,692	-	113.8	113.8
1989	126,631	162,306	-	162,305	1	128.2	128.2
1990	174,968	193,077	-	193,077	-	110.3	110.3
1991	244,458	224,223	-	224,223	-	91.7	91.7
1992	259,553	214,983	-	214,983	-	82.8	82.8
1993	275,552	242,623	-	242,619	4	88.0	88.0
1994	259,700	275,300	-	275,300	-	106.0	106.0
1995	318,500	319,831	-	319,829	2	100.4	100.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 증권거래세 예산 및 징수

(단위: 백만원, %)

	예산액(A)	징수결정액(B)	부과액	수납액(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B/A)	(C/A)
1965	14	10	18	20	-	-	69.9	69.9
1966	18	21	21	21	-	-	114.6	114.6
1967	36	46	46	46	-	-	127.7	127.7
1968	54	33	33	33	-	-	60.5	60.5
1969	61	76	72	76	-	-	125.1	125.1
1970	69	80	84	80	-	-	116.6	116.6
1971	84	63	63	63	-	-	75.0	75.0
1979	4,298	3,317	3,308	3,317	-	-	77.2	77.2
1980	2,701	2,582	2,582	2,580	2	1	95.6	95.5
1981	3,276	5,388	5,539	5,377	7	4	164.5	164.1
1982	4,663	4,617	4,608	4,594	16	7	99.0	98.5
1983	5,390	4,803	4,811	4,760	40	4	89.1	88.3
1984	5,025	6,571	6,569	6,482	55	34	130.8	129.0
1985	7,869	7,324	7,267	7,253	56	14	93.1	92.2
1986	7,627	19,131	19,131	18,937	116	78	250.8	248.3
1987	20,719	78,521	78,426	78,369	130	22	379.0	378.2
1988	88,419	250,243	250,068	249,946	192	105	283.0	282.7
1989	242,005	415,825	415,453	415,512	214	99	171.8	171.7
1990	529,194	224,277	223,934	224,010	196	71	42.4	42.3
1991	125,184	129,832	129,350	129,325	208	299	103.7	103.3
1992	165,458	166,208	165,584	165,825	186	197	100.5	100.2
1993	261,593	307,474	306,912	306,905	319	250	117.5	117.3
1994	349,200	684,902	684,160	684,030	463	409	196.1	195.9
1995	568,600	503,757	503,023	502,636	609	512	88.6	88.4

주 : 1972년 1월 1일에 폐지된 증권거래세가 1978년 12월 5일에 다시 신설됨.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 증권거래세 부과

(단위: 명, 백만원)

	합계		상장증권		일반증권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1979	429	3,308	-	-	-	-
1980	629	2,582	-	-	-	-
1981	743	5,539	-	-	-	-
1982	1,079	4,607	-	-	-	-
1983	973	4,811	-	-	-	-
1984	1,334	6,569	-	-	-	-
1985	1,267	7,267	-	-	-	-
1986	2,508	19,131	-	-	-	-
1987	1,566	78,426	249	75,946	1,317	2,480
1988	2,365	230,068	327	224,765	2,038	5,303
1989	1,965	415,453	560	411,035	1,405	4,418
1990	2,761	223,934	654	216,744	2,107	7,190
1991	2,941	129,350	658	122,956	2,283	6,394
1992	2,950	165,868	661	157,175	2,289	8,693
1993	2,822	306,912	732	297,081	2,090	9,831
1994	3,622	684,160	782	663,514	2,840	20,646
1995	4,782	503,023	888	483,901	3,894	19,122

주 : 인원은 각 연도 12월 31일 현재인원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5. 증권거래세 감사실적

(단위: 건, 백만원)

	건수	세액
1985	11	24
1986	5	295
1987	1	7
1988	9	84
1989	7	125
1990	16	99
1991	1	1
1992	3	293
1993	9	35
1994	-	16
1995	6	68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